



2020. 11.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발 간 사



경찰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옴부즈만이 설치된 지 올해로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관된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경찰은 그 어떠한 국가기관보다 국민과 가까이에 있으며 다양한 곳에서 국민의 부름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모습은 더욱 돋보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경찰의 위상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거는 기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현장에서 다양한 요구를 받다보니 한정된 여건으로 이를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옴부즈만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2만 4천여 건의 경찰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였고 이 중 8백여 건에 대해 경찰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고충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니 임의동행 거부권 미고지, 현행범 체포 시 경찰장구 과잉 사용, 사건 처리상황 통지 불이행, 그밖에 불친절한 언행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업무 처리 중에 나도 모르게 또는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6년간 제기된 고충민원 중 반복해서 발생하는 사례를 모아서 이 사례집에 담았습니다.

경찰관 여러분들이 이 사례집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신 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느끼신다면 이 책은 사례집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사례집을 통해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례집을 항상 가까이 두는 좋은 벗이라 생각하시고 업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 전 회

| 2020 |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contents



1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

01	의자 젖힌 자세로 민원 응대	... 10
02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불친절 응대	... 13
03	위협 운전 도움 거절	... 16
04	아버지에게 민원 내용 누설	... 19
05	동의 없이 제3의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 22
06	112신고 도움 요청 거절	... 25
07	신변보호 및 긴급대응 조치 미흡	... 28
08	철도안전과 무관한 기차 내 조치 거부	... 33
09	초동조치 소홀	... 36
10	112신고처리표 등에 객관적 사실 미기재	... 39
11	고소사건 접수 거부	... 42

2 임의동행 절차

12	임의동행 시 경찰관 신분 제시 및 설명 불이행	... 46
13	임의동행 거부권 등 고지 불이행	... 50
14	임의동행동의서 미작성	... 53

3 경찰장구 사용

15	현행범 체포 거부 사유로 바로 뒷수갑 사용	... 58
16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뒷수갑 사용	... 61
17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포승과 수갑 사용	... 65

4 현행범 체포

18	현행범 체포절차 준수 미흡	... 70
19	현행범 체포 시 반말과 모욕적 언행	... 74



수사 진행

20	성폭력 사건 전담수사관 처리	... 78
21	아동학대사건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 81
22	스마트워치 제공 시 문제점 미고지	... 84
23	수사개시 통보 대상 미확인	... 88
24	수사지연 시 수사진행상황 미통지	... 91
25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청인 미확인	... 94
26	쌍방폭행 고소인에게 사건처리결과 미통지	... 97
27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거부	... 100
28	동의나 보강수사 없는 가택 수색	... 104
29	강제수색 경찰관 소속과 성명 미고지	... 107
30	지명수배 해제 지연	... 110
31	촉탁수사 의뢰 절차 불이행	... 113
32	수사협조자 신뢰보호 미흡	... 116
33	증거 추송 누락	... 119
34	임의제출물 반환 절차 미준수	... 122
35	증거영상자료 보존기간 경과 등 관리 소홀	... 125
36	증거영상자료 삭제 등 관리 미흡	... 128
37	피의자 신문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	... 131

교통사고 조사

38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 136
39	뺑소니 교통사고 수사 미흡	... 139
40	교통사고조사 시 마디모 검사결과 미반영	... 142
41	교통사고 수사단서 부실 확보	... 146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

42	차량 소유자에게 잘못된 과태료 부과	... 150
43	긴급자동차 과태료 미면제	... 153

기타

44	공상 인정 거부	... 158
----	----------	---------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1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1

의자 젖힌 자세로 민원 응대

반말을 하거나 거의 눕다시피
의자를 젖힌 상태로 민원 응대를 해서는 안 돼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으로 상담을 받던 도중 담당 경찰관이 반말을 하고 비웃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여 모멸감을 느꼈어요.”

민원인(38세, 여)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경찰서 수사과에 방문하였는데, 과거에도 두 번이나 보이스피싱 때문에 상담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번 피해로 인해 세 번째 방문 했더니, 경찰관들이 민원인을 향해 “또 왔어요?”라며 비웃듯이 인사를 건넸다. 담당 경찰관은 팔짱을 끼고 의자를 뒤로 젖힌채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반말을 하고 짜증을 내며 ‘멍청하게 두 번이나 보이스피싱 당하냐?’ 며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상담 도중 일어나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민원인은 이러한 경찰관의 태도에 불쾌감을 느껴 거듭 항의하였으나 무시당했다.

민원인은 상담을 마치고 간 경찰서 내의 화장실에서, ‘5초만 쳐다봐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담당 경찰관이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본 것과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래요?”라는 말은 민원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경찰관과 상담녹음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이후 ‘권익위’라 한다)에 제출하여 불친절하고 오만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권익위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원인을 이해시키려는 과정에서 다소 불친절하게 응대했을 수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고 민원인은 같은 수법인 전화금융사기로 두 번이나 피해를 입은 이력이 있어서 당시 민원인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또 다시 경찰서를 찾아왔고, 100만원의 사기를 당했는데도 엉뚱하게 대출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담당 경찰관은 “민원인 진술과 같은 대출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는데도 민원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를 이해시키려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다소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대화 시 민원인 눈을 바라보며 대화하였고, 책상 앞에 가림막이 설치되어 민원인의 신체를 위·아래로 훑어볼 수도 없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비록 경찰서에 상담하러 온 민원인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는 태도로 반말을 하고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로 누워서 응대하며, 상담 도중 다른 업무를 처리한 경찰관의 태도는 부적절하다.

민원인이 제출한 상담 녹취록과 경찰관이 제출한 경찰서내 CCTV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거의 반말로 대화한 것,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민원인이 상담 중

항의 하였음에도 언행이 바뀌지 않은 것, 담당 경찰관이 의자를 젖혀 반쯤 누운 자세에서 응대하고 대화 도중 자리를 뜨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녹취록과 CCTV를 통해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담당 경찰관의 민원응대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시사점

민원인이 두 번이나 같은 사건으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서 민원인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했는데도 다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상담을 받으러 방문한 것이 해당 경찰관으로서서는 짜증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민원인의 입장을 배려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이며 더욱이 상담 도중 민원인이 항의를 했어도 계속 같은 태도로 일관한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다.

특히 IT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녹음 및 촬영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으므로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상대방이 기록할 수 있고, 경찰서 내의 CCTV는 항상 나를 쳐다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하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 관련 사례임.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불친절 응대 민원인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반말을 하거나 불친절하게 응대해서는 안 돼요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이 시종일관 반말을 하고, 무례하고 불친절하게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어요.”

민원인(20대 남성)은 2년 전 고소사건의 피의자로서 경찰관(40대 남성)과 고소 사건 이송과 관련하여 2~3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누군데? 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있는 거지.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할 거니까 조사 잘 받아. 우편으로 보낼 거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해, 담당 형사한테.”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 이후 2년이 지나 민원인은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당시 불친절 했던 사실에 대해 언급하자 경찰관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권익위에 그 당시 경찰관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제출하여 불친절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당시 민원인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민원인도 경찰관의 반말에 대해 일체의 항의가 없었는데, 2년이 지나 고소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 5개월 후에서야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며, 경찰관은 당시 녹취 파일에 담긴 목소리가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민원인에게 정중히 사과한다고 답변하였다.

경찰관은 공직자로서 상대방의 연령, 죄목, 피의사실 등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친절하고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한 것은 민원인에게 모욕감 또는 수치심 등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반말을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상대방이 어리고 나이 차이가 많은데다 피의자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불친절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민원인은 20대이고 담당 경찰관은 40대로, 요즘 유행하는 “나때는...”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시대에 경찰관은 공직자로서 나이가 많건 적건, 피의자건 민원인이건 항상 존대를 해야 한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당시 민원인이 웃으며 얘기하는 등 전혀 불만을 표출하지 않다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에야 민원을 제기한 점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원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혹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했을 수 있고, 당시 민원인의 태도에서 불만을 읽을 수 없었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점을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

일선 경찰관은 상대방의 연령, 죄목, 피의사실 등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친절하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 관련 사례임.



3

위협 운전 도움 거절

시민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위협적인 오토바이 운전자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관은 ‘신고 접수하세요’ 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무책임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해주세요.”

민원인(여성)은 도로 위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민원인을 향해 욕을 하고 손을 위로 드는 등 다소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때마침 순찰차가 옆 차선에 정차하여 민원인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신고 접수하세요”, “위험하니까 여기 계시면 안돼요”라고 말하고 떠났다. 이에 민원인은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경찰관은 권익위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건 현장을 보니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팔을 들어 신청인을 겁주려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며 민원인이 경찰차를 두드리며 “내리세요”라는 말을 반복하여 “무슨 일이에요? 위험하니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라고 대답을 한 것이다. 하지만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신고내용을 차분히 청취하지 않은 것과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고 난 뒤 민원인과 경찰서로 동행하여 신고접수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해명하였다.

민원인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경찰관은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경찰관이 제출한 SD 카드 자료를 살펴보면, 민원인이 순찰차를 발견하고 순찰차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 오토바이 운전자도 민원인을 뒤따라오는 모습, 수 초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떠나고 민원인이 화난 모습으로 순찰차를 향해 항의를 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이 발생한 장소가 차량 통행이 많은 8차선 도로이고, 야간이어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인 것을 감안했을 때 경찰관이 민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민원인 및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민원인의 차량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민원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시사점

국민이 신변위험 등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돕는 것은 경찰관의 당연한 임무로 위 사례의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은 도로 한가운데이므로 담당 경찰관은 민원인의 차량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사고를 방지한 후, 민원인을 안심시키고 진술을 청취한 후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경찰관서로 인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냥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인에게 신고하라고 한 후 떠난 것이다. 일선 경찰관은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일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로 일해야만 현장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를 명시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범죄 행위가 행해지려 할 때 경고를 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같은 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관련 사례임.



아버지에게 민원 내용 누설

민원 내용을 아버지에게 말해도 제3자에게 누설한 것이 되니, 반드시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경위를 확인해야



“민원 내용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민원인의 주거지로 찾아와 사생활을 침해한 경찰관을 조치해 주세요.”

민원인(20대)은 택배를 분실하여 112에 도난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정신이상자’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관이 민원인 아버지에게 전화하였고,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의 집으로 찾아왔다. 민원인은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불법 수집한 것이 의심되고 민원 내용을 민원인 아버지에게 문의하는 등 부적절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해 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청문감사담당관실 경찰관은 민원인 아버지의 휴대폰 전화번호는 과거 민원인 가정에서 발생한 다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출소에 기록되어 있었으며, 민원인을 직접 만나 고충민원의 상세한 내용과 경위를 파악하고, 112 출동경찰관이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할 목적으로 민원인 아버지의 승낙을 받고 집을 방문하였으나, 민원인이 만나주지 않아 전화로 두 차례, 문자메시지로 한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돌아갔다고 해명하면서 향후 민원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민원인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로 민원 내용을 아버지에게 누설한 경찰관의 행동은 잘못이다.

경찰관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직접 고충민원의 내용이나 경위 파악을 해야 하고 설령 민원인이 직접 만나는 것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민원인 나이가 20세 이상인 성년으로 아무리 아버지라도 민원인과는 별개인 제3자인 아버지에게 고충민원의 내용을 얘기한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내용이나 작성경위 등과 같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고 청문감사담당관실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위 사례의 민원인은 민원 제기 후에 오는 경찰관들의 연락을 피했고, 경찰관은 민원인과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민원인 아버지를 만나 민원 내용을 얘기하며 도움을 구했으나,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다.

민원인의 민원내용이나 작성경위 등과 같은 정보는 비록 가족이더라도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해당한다.

일선 경찰관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을 통해서만 민원의 상세내용이나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민원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사례임.



5

동의 없이 제3의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 또는 이용하거나
동의 없이 제3의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돼



“부부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임의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해 불쾌합니다.”

민원인은 집에서 부인과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우당탕 소리가 났고 부인이 울면서 비명을 지르자 이웃 주민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 두 명이 출동하였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임의로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민원인과 부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들었는데, 민원인은 자신의 집에 경찰관들이 찾아온 것이 싫었고, 부인 또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A경찰관이 부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묻자 부인이 ‘왜요?’ 라고 되물었으나, A경찰관이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다시 요구해 부인은 어쩔 수 없이 알려주었다. 민원인은 경찰관들에게 빨리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여 경찰관들은 되돌아갔다. 경찰관들은 이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들을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전문상담원이 부인에게 가정폭력 상담을 받도록 전화를 걸었다.

이후 민원인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고, 임의로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한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하였다.

민원인 부인의 개인정보제공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한 경찰관들의 업무처리는 잘못했다.

민원인의 부인이 직접 개인정보 제공 동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피해자 지원에 대한 업무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에도, 민원인이 퇴거를 요구하여 타기관에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로 민원인 부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민원인 부인의 개인정보를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제공하여 민원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112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수집·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민원인 부인에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물었을 때 부인은 거부감을 표시했지만, 경찰관은 112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자 경찰관의 말을 믿고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으나, 부인의 개인정보를 가정폭력 피해 상담 목적으로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므로, 대민 업무가 많은 경찰관은 민원인과 사건관계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이용 시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 관련 사례임.



112신고 도움 요청 거절

112신고를 받으면 민원인의 위험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늦은 밤 공원 출입문이 잠겨서 안에 갇히는 바람에 112신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선생님 저희가 거기다 가둬둔 게 아니잖아요?“ 였습니다.

민원인은 ○○축제기간 중에, 테마공원 안에서 음식 판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축제 관리자는 공원 내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보아 출입문을 잠갔고 민원인은 줄지에 안에 갇히게 되어 ○○축제 주최측 전화를 해보았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곧바로 112신고 전화를 걸었다.

민원인과 경찰관의 실제 대화 내용을 인용해 봤다.

민원인: 지금 일하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다 잠겨가지고 사람이 한명도 없어요..

차가 나갈 수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찰관: 그것은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관리하는 데로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죠? 저희가 관리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 사람이 한명도 없어서... 그 담당부서나 이렇게 알아봐 줄 수는 없나요? 제가 핸드폰 배터리도 없어 가지고 지금.

경찰관: 저희도 그건 잘 모릅니다. ○○축제 사무소에다 한번 물어보시죠?

민원인: 아. 그러면 저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 되나요?

경찰관: 선생님, 저희가 거기다 가둬둔 게 아니잖아요?

며칠 후 민원인은 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112신고 전화응대에 관해 조사를 해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권익위에 답변자료를 제출하여 본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민원인의 112신고는 공원에서 차량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신고 시간이 비록 늦은 밤이기는 하나 민원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신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 테마공원은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곳이며 ‘차량을 이동할 수 없다’는 신고만으로 강제로 문을 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경찰의 112신고 전화는 범죄 신고를 위한 것으로 생활민원이나, 민사관계 등의 무분별한 신고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고는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비출동 신고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112신고 내용이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담당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112는 범죄 신고를 위한 전화이고 민원인의 신고 내용은 생활민원(코드3)에 해당되어 규정상 출동할 수는 없지만 당시 신고 시간이 밤 12시 8분으로 늦은 시각이었다. 민원인은 “휴대폰 배터리도 떨어졌다. ○○사무소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갇혀 있다. 파출소라도 연락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전화응대 경찰관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민원인이 테마공원 안에 갇혀서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선생님 저희가 거기다 가둬둔 게 아니잖아요?”라고 한 것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권익위는 이 사례에서 112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민원인 중심으로 생각하고 119에 신고를 해주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다.

시사점

위 경찰관의 경우 복지부동 사례는 아니지만, 늦은 밤에 공원에 갇히고 전화도 안 되는 민원인의 유일한 희망의 끈을 배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공무원은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배려하며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반말·욕설만 인권침해가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무성의하게 대응하는 것도 때론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선 경찰관은 비록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니더라도 119 등 관련 공공기관을 연결해 주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야 한다.

범죄 등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처리규칙」 제1조(목적), 같은 규칙 제9조(112신고의 분류) 제2항의 대응코드 분류, 접수 내용이 code 3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종결하거나 소관 기관 또는 담당 부서에 신고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같은 규칙 제10조(지령) 제2항 관련 사례임.

7

신변보호 및 긴급대응 조치 미흡

살해협박 신고를 받으면 신변보호제도를
안내해야 하고, 살해위험 신고 시
긴급출동·구급대응 조치를 철저히 해야



“어머니가 살해협박을 받아 파출소에 두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출동하지 않았고, 파출소로 직접 찾아가 하소연했으나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했어요.”

민원인의 어머니(이하 피해자)는 식당을 운영했는데, 한 남자(이하 피의자)가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피의자가 식당에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살해 협박하였고 이후 식당 주변을 맴돌았다. 위험을 느낀 피해자는 파출소에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하소연했으나, 경찰관은 출동하지 않았고 A경찰관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다.

그 후 민원인은 피해자를 위해 식당에 CCTV를 설치하였고, 며칠 후 피의자가 칼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하게 돼 파출소에 “너무 위험하다. 빨리 가달라. 엄마가 죽는다.”라고 신고하고 위험을 알렸지만, 피해자는 피의자가 휘두른 칼에 세 차례 찔렸고, 돌 등으로 머리를 맞았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어머니가 살해될 위험이 있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고, 피를 흘리는 어머니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해당 경찰관을 처벌해 주세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경찰관은 무전기도 없이 천천히 걸어와 식당에 도착해서도 피의자를 제압하지 않고 식당 입구에서 멈춰 서서 피의자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멀찌감치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 후 피의자가 식당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도 계속 지켜만 보고 있었고, 피의자가 또다시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서는데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의자가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자 B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고 파출소로 동행하여 걸어갔다. 이때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혼자 방치되었다.

이후 민원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 구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처벌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권익위에 손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A경찰관은 두렵다며 도움을 요청하러 파출소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순찰해 주겠다. 신고하라.”, “파출소가 바로 앞이니 신고하면 신속히 조치해 드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B경찰관은 손·발바닥의 각화증으로 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현장에 도착하여 적극적으로 진압하면 피의자의 돌발행동이 예상되었으며, 대퇴부 이하 사격 시 피의자를 관통한 후 피해자가 맞을 확률도 존재하여

총기사용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분노가 커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제지하면 칼로 피해자를 더 찌르는 등 추가 범행 시도 가능성이 컸다고 답변하였다.

사건 관련 경찰관들의 징계가 필요하고, 향후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

A경찰관은 두렵다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파출소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순찰해 주겠다. 신고하라”고 말한 것 외에 신변보호제도 안내나 요청서를 작성토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리고 파출소 내 다른 경찰관들도 피의자가 식당 주변을 서성인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서 접수하지 않았고 112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지 않았으며, 출동 요구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경찰관은 “너무 위험하다. 빨리 가달라. 엄마가 죽는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서 100m 거리를 1분 10초간 걸어서 출동하였고, 경찰관의 필수장비인 무전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며, 칼에 찔려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를 먼저 살피고 안전여부를 묻거나 피해 상황 파악을 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있는 급박하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의 최후의 수단인 물리력도 사용하지 않아, 피의자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가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파출소로 피의자를 연행하는 동안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구급차가 올 때까지 방치하는 등 현장 구급 대응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청에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범죄신고자·피해자 등 신변보호 제도 안내와 현장 구급 대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사점

이 사건은 2019년 MBC 실화탐사대 ‘예고된 칼부림, 경찰의 미흡한 대응... 사건의 전말은?’이란 제목으로 방영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받았으며, ○○지방경찰청 국정 감사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이 사건 말고도 미디어에서는 범죄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에 관한 내용을 심심찮게 다루고 있다. 주로 경찰의 과잉 대응 또는 소극 대응에 대한 비판이다. 총을 쏘거나 피의자를 강하게 제압하여 피의자가 죽거나 다치면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곤 한다. 반면에 위 사례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몸을 사린다 하여 비판받는다. 경찰관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없고, 상황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유사사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경찰관은 살해 위협을 신고 받으면 접수하고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하고 신변 위협에 대해 도움을 요청받을 때는 신변보호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신변보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살해 위협 신고 접수 시 긴급 출동하면서 필수 장비인 무전기 등 경찰장구를 챙기고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하며 현장 상황을 알려 피해자에 대해 구급 대응 조치를 적절히 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고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피의자의 도주, 자살, 폭행 등 염려가 있을 때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범죄수사규칙」 제95조(체포·구속시의 주의사항) 제4항,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같은 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9540),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2.2.5.조, 제보·신고 내용이 불명확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112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하라고 규정한 「지구대·파출소 일반신고 및 시민 구두제보 접수 강조 지시」, 「지역경찰 현장매뉴얼」, 「지역경찰 운영규칙」관련 사례임.



철도안전과 무관한 기차 내 조치 거부

철도안전과 무관한 기차 내의 일반 법규 위반은 경찰관의 직무이므로 즉시 출동해야



“지하철 열차에서 구걸하는 자를 112신고 하였는데, 경찰관은 경찰이 처리할 업무가 아니라고 처리하지 않았어요.”

민원인은 서울메트로 보안관인데, 근무 중 열차 안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은 “열차 안에서 일어난 일을 왜 우리한테 신고를 하나? 경찰이 처리할 규정이 없고 경찰 업무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구걸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 조사도 하지 않고 되돌아갔다.

민원인이 재차 112신고를 하자,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이하 특사경)¹⁾에게 신고하라. 고발을 하려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라.”

면서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후 민원인은 무조건적인 경범죄 처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법권이 있는 경찰관이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인데, 경찰에게는 신고처리를 위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등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지하철 전동차 내의 질서 유지는 특사경의 고유 업무이므로 걸인에 대해 통고 처분을 원하면 특사경이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리할 사항이며, 고발을 원하면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 전동차 내의 구걸행위에 대해 철도종사자(지하철보안관)가 현장에 없었고 승객이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처리했을 것이라고도 답변하였다.

경찰관은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서의 구걸행위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

「철도안전법」 제3조는 ‘철도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철도안전’ 과 무관한 기타 보호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도시철도 내에서도 당연히 「형법」이나 「경범죄 처벌법」등과 같은 일반적 형벌법규가 적용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경찰의 관할 및 직무 수행 범위는 크게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이므로, 비록 도시철도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하여도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처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형사소송법」에서는 사법경찰관리를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구분하는데,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보이는 경찰이 일반사법경찰관리이고, 마약, 출입국, 철도 등 특정분야에 한해 그 분야만 수사나 조사를 하는 경찰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업무 영역이 구분된다.

또한 걸인이 도시철도 전동차 내에서 한 구걸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8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아 일반 사법경찰관리가 조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권익위는 민원인이 신고한 도시철도 내 구걸행위에 대한 조치를 거부한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찰청에는 도시철도 내에서 발생한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지하철경찰대 또는 지역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사점

해당 경찰관이 “「철도안전법」에 근거하여 열차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경찰이 관여할 근거가 없고 특사경 등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으로 미루어 이 민원은 법률 해석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원인이 두 번이나 112신고했다면 무조건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비록 도시철도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하여도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철도안전’과 무관한 기타 보호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일반적 형벌 법규가 적용되는 「철도안전법」 제3조, 경찰의 관할 및 직무 수행 범위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포괄적인 것이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전동차 내에서의 구걸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관련 사례임.



9

초동조치 소홀

초동조치를 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경찰관이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가해자들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귀가시켜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되어 사건처리가 불가하대요.”

민원인이 공원 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해자)가 옷을 모두 벗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었다. 민원인은 가해자에게 “여기서 옷 벗고 그러지 맙시다.”라고 공중시설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자 가해자가 “탈의실이 없어서 화장실에서 옷 좀 갈아입는데 무슨 문제야. 당신이 뭔데 그래?”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민원인은 112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개××, 어린놈의 새끼” 등 욕설을 하며 밖으로 나가 민원인도 따라 나가자, 밖에 있던 가해자의 일행 10여 명이 민원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도 가해자와 그 일행은 민원인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아 민원인은 경찰관들에게 상황 해결을 요청했으나, “녹음을 했느냐.”, “증거가 없으면 고소를 해도 증거가 어렵다.”, “경찰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며 민원인의 신원을 파악하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수첩에 적었는데, 이를 옆에서 본 가해자가 민원인의 출생 연도를 언급하며 ‘어린놈의 새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경찰관들은 가해자들이 인적 사항 확인을 거부하여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해자들을 귀가시켰다.

이후 민원인은 부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권익위에 손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경찰관들은, 민원인에게 사건 경위를 듣는 중 가해자가 계속 흥분상태로 민원인에게 다가가려 하자 이를 제지하였고,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 했으나 가해자가 밝히기를 거부하여 확보하지 못했으며, 민원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해자를 귀가 조치시켰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하여는, 민원인과 가해자를 분리시킨 후 민원인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민원인이 신분증이 없어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경찰관의 미흡한 조치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게 돼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범죄수사규칙」 제5조 및 경찰청 현장매뉴얼 등에 따르면, 경찰관은 사건 관계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수집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시 민원인이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었음에도 가해자들이 인적 사항 확인을 거부하였고 흥분상태라는 이유로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하였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게 되어 민원인의 신고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경찰관들은 사건 관련자의 인적 사항 확보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의 인적 사항 확보 과정에서 가해자가 민원인의 생년월일을 들었고 민원인에게 추가적으로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찰관들이 112신고 처리를 부당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권익위는 112신고 처리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행위 가해자의 신분확인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출동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가해자들로부터 ‘개XX’, ‘어린 놈의 새끼’ 등 모욕적인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한 민원인은 112에 신고를 했지만 출동 경찰관들의 미흡한 대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 현장에서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등의 신상정보 확인은 수사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출동 경찰관들은 이를 소홀히 하여 가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했다.

이런 행위는 시민들이 경찰관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할 염려가 있다. 모쪼록 모든 경찰관은 기초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증거의 발견과 수집에 힘써야 할 것이다.

경찰관은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한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 관련 사례임.



112신고처리표 등에 객관적 사실 미기재

112신고사건처리표와 근무일지에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에게 확인한 사실만을 기재해야



“병원에 수술비 환불을 요구한 적도 없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은 적도 없는데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와 근무일지에는 모두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바로잡아 주세요.”

민원인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항목, 수술 전 사진 등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의 의사는 수술을 잘못된 적은 없다고 말하였고, 병원 직원들도 제출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민원인과 의사 간 다툼이 일어나자 병원 측에서는 민원인을 112와 119에 신고하였다. 민원인은 병원에 요구한 자료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수술비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와 근무일지에는 수술이 잘못되어 병원에 환불을 요구했고

병원에는 과실이 없다며 환부를 해 주지 않아 시비가 됐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병원 의사와 보건소가 서로 연락하여 관련 자료를 발급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민원인은 출동한 119구급 대원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119 출동내역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권익위에 출동 경찰관과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며 잘못 기재된 서류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출동 당시 병원 직원들이 환부 및 의료과실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기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환부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고, 병원 의사와 보건소가 서로 연락하여 관련 자료를 발급해주기로 했으므로 발급해주었다고 기재했다고 해명하였다.

경찰관은 112신고사건처리표와 근무일지를 작성할 때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진술을 모두 기록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

민원인이 병원에 수술비 환부를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동 경찰관은 병원 측 진술에만 의존하여 민원인이 수술비 환부를 요구한 것처럼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에 기재하였고, 병원 의사가 보건소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간호사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알려준 뒤에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가져오면 서류를 발급해주도록 지시하였을 뿐 민원인이 관련 자료를 발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발급받은 것처럼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에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 작성 시 112신고자 및 피신고자 등의 진술을 모두 기록하여 관련 기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112신고사건처리표와 근무일지는 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 상황 등이 기재된 공적인 서류이다. 따라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중 한쪽의 주장만을 기록해서는 안 되고 양측의 주장이 있다면 모두 기록해야 한다.

위 민원 사례에서 경찰관은 환불 요청이 있었다는 병원 측 주장만 기록하였고, 관련 서류를 받기로 했을 뿐 받은 것이 아닌데도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며, 병원 의사와 상담 중 민원인이 119구급대원의 처치를 받은 것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경찰관이 힘 있는 병원 편만 들어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112신고처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하면 민원인의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으므로 경찰관은 양쪽 모두의 진술에 귀 기울이고 진실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지역경찰관리자와 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주요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근무일지의 기록·보관) 제1항 관련 사례임.

11

고소사건 접수 거부

증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범죄수사규칙」의
반려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소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돼



“고소 증거 자료를 갖고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담당 경찰관이 화를 내고
이 판 거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소접수를 거부했어요.”

민원인은 군 동기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같은 군 선임이 ‘또라이네 이 새끼’ 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래서 민원인은 모욕을 당했다고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했고, 얼마 뒤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이메일을 받았다.

민원인은 페이스북 게시글 화면을 캡처한 증거자료를 갖고 해당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경찰관은 자료를 살펴보더니 민원인에게 “이판 건 범죄도 되지 않는다. 그냥 돌아가라.

내가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이딴 것을 왜 신고하느냐!”며 화를 내며 소리쳤고, 민원인은 경찰관의 태도에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민원인은 이후 동일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하였고, 고소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에 민원인은 권익위에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고소접수를 거부하고 모멸감을 준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페이스북 캡처 자료로는 증빙이 부족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2조에 따라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반려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의 주장처럼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만한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고소접수를 반려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된다.

민원인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찰관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고소사건을 반려하였다. 그리고 민원인이 같은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검사의 수사지휘로 다른 경찰관이 수사하여 민원인의 고소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판례에서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의 지정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경찰관 개인이 주관적인 범죄 구성여부를 판단하여 고소를 반려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

권익위는 민원인에 대한 모욕 사건을 부당하게 반려하여 「범죄수사규칙」 제42조제1항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위 사례의 민원인은 군대 선임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증거 자료를 갖고 경찰서를 방문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화를 내며 접수를 거부하였다. 게다가 민원인에게 모욕적인 말까지 했다.

민원인이 피해를 입어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경찰관은 민원인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신중히 판단하여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관은 일부 증거자료가 미흡한 경우라도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서 추가로 범죄를 밝힐 수 있으므로 고소 내용이 경미할지라도 단편적으로 보아 고소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고소인의 의사가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시(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관련 사례임.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임의동행 절차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12

임의동행 시 경찰관 신분 제시 및 설명 불이행

임의동행 시 경찰관의 신분제시 및 임의동행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



“범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이유를 듣지 못했고, 범인이 확실하다며 고압적이고 무례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민원인은 오후 7시 50분경 집 근처에서 로또복권 판매 마감시간이 임박해 복권을 사러 판매점으로 달려가던 중 경찰관들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민원인은 내용을 모르는 범죄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어 지구대에 동행하게 되었는데, “무슨 일인데 이러십니까?”라고 물으니, 경찰관들은 “지구대가 근처에 있으니 일단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민원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고 임의동행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민원인은 지구대에 도착하여 30여 분간 조사를 받았는데, A경찰관은 민원인을 가리켜 “(범인일

확률이) 100%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범죄사건의 진범으로 보이는 다른 임의동행자가 도착하자 민원인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래도, 민원인은 걱정이 돼서 A경찰관에게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조사기록을 잘 작성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는데, 오히려 A경찰관은 “지금 나한테 지시하는 것인가?”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불심검문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임의동행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권익위에 요청하였다.

해당 경찰관들은 민원인에게 임의동행 이유와 목적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당시 성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추리닝 차림으로 뛰어 내려오는 민원인을 발견하고 “○○지구대 ○○○경장입니다.”라고 밝힌 후 민원인에게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묻자, 민원인은 당황한 모습으로 “노트를 사러 간다.”고 더듬으며 말하여 112신고된 범인으로 의심하였다. 그래서 민원인을 제지한 후 “바바리맨 112신고가 있으니,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보내주겠다.”고 설명하였는데, 범인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기로 한 다른 경찰관이 5분이 지나도록 알려주지 않아 양해를 구하고 민원인을 지구대로 동행한 것이다. 30여분 후 진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잡히게 되자 민원인을 귀가 시켰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민원인에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퇴거할 수 있는 권리를 알리지 않았으며, 민원인을 지칭하여 범인일 확률이 “100%다.”, 민원인에게 “나한테 지시하는 것인가?”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민원인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범죄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민원인에게 사과하기는 하였지만, 적극적으로 사과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민원인에게 임의동행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잘못이 인정된다.

경찰관들은 민원인에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민원인을 임의동행하여 조사하였음에도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절차를 부적절하게 한 것이 인정된다.

권익위는 민원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이유 설명 등을 소홀히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하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위 민원 사례의 경찰관들은 민원인을 피의자로 의심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퇴거할 수 있는 권리도 알리지 않았다.

또한 경찰관은 연령, 죄목, 피의사실 등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친절하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을 향해 범인일 확률이 100%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조사

기록을 잘 작성해 달라는 민원인 요구에 대해 “나한테 지시하는 것인가?”라는 등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과거 권위주의적인 경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경찰에 대한 반감과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일선 경찰관은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4항,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 거부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관련 사례임.



13

임의동행 거부권 등 고지 불이행

임의동행할 경우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고,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도록 해야



“경찰관이 임의동행 시 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았고, 추격 과정에서 밀쳐 넘어져서 다쳤어요.”

민원인은 모임을 마치고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던 중 학원승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서 시비가 시작되어 실랑이가 벌어졌다. 민원인은 승합차 뒷 부분을 주먹으로 한번 쳤고, 이에 운전자가 항의하자 민원인이 운전자의 배를 손바닥으로 한번 쳤다. 운전자는 이 상황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녹화한 뒤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관 두 명이 인근 지구대에서 출동하였고, 운전자는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에게 녹화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임의동행 의사를

물었고 민원인은 동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

지구대에 온 이후 경찰관은 “그럼 진짜 현행범 체포할 수밖에 없어”, “아 체포할 수도 있어. 진짜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하자 민원인은 자신이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경찰관이 제지하자 민원인은 뛰어나갔다. 경찰관은 민원인을 추격하다 민원인이 메고 있는 가방을 밀쳐서 민원인은 중심을 잃고 화단에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

이에 민원인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고 임의동행 시 거부권 등의 고지를 하지 않고, 밀어서 다치게 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권익위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임의동행은 민원인이 폭행사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고, 그 과정에서 임의동행 권리를 고지하였다. 또한 민원인이 넘어진 것은 지구대를 나가 도망치다가 화단 울타리에 부딪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폭행사건은 이후 민원인이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지구대를 벗어나려는 민원인을 제지한 경찰관은 임의동행 장소로부터 민원인의 퇴거권을 침해하였다.

지구대 현관 CCTV에 의하면, 지구대 밖으로 나가는 민원인을 뒤따라나간 경찰관이 민원인의 왼팔을 잡아 민원인을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민원인이 뒤돌아 뛰어나가고 이를 경찰관이 뒤따라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것을 종합해볼 때, 민원인의 임의

동행 장소에서의 퇴거권이 인정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민원인을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한 후 퇴거를 제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시사점

경찰관은 민원인이 폭행사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임의동행했다고 하지만, 민원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수사하면 그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정당하지 않다.

일선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는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관에게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7항, 수사에 관하여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경찰관은 임의동행 대상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54조의2(임의동행) 제1항,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같은 규칙 제2항 관련 사례임.



임의동행동의서 미작성

임의동행하는 경우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경찰관이 지구대로 데려갈 때 임의동행 고지를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을 중용했어요.”

민원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신고내용은 민원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밀었고, 가벼운 폭행도 했다는 것이다.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성폭행 가해자이므로 지구대로 가야 한다.” 고만 했지 어떤 이유로 임의동행을 해야 하는지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동의서에는 민원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이후 민원인은 임의동행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권익위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민원인과 신고자가 서로 화해하였고, 신고자가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임의동행동의서에 민원인의 서명을 받지 않은 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된다.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경찰관이 “오늘 그 성폭행 건으로 임의동행 하겠습니까.”라고 하자 민원인이 “예.”라고 대답하였고, 경찰관이 순찰차에 승차 시 언제든지 원하면 귀가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임의동행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관이 임의동행 동의를 받았음에도 임의동행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권익위는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시사점

위 사례의 경찰관은 비록 민원인이 피해자와 서로 화해하였고, 피해자가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원한다고 했더라도 민원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서의 동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선 경찰관은 임의동행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한 경우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54조의2(임의동행) 제2항, 수사에 관하여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서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만 수사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한 대법원 판시(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관련 사례임.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경찰장구 사용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15

현행범 체포 거부 사유로 바로 뒷수갑 사용

현행범 체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바로 뒷수갑을 채워서는 안 돼



“휴대폰을 보고있던 60대 여성에게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을 조치해주세요”

민원인(60대 여성)은 ○○빌딩 앞에서 ‘여직원 살해사건 재수사 요청’과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면서 쓰레기를 투척하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며 건물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민원인에게 뒷수갑을 채웠는데 민원인은 “나 수갑 안차도 가니까 수갑 채우지 마요. 내 발로 간다구요.”라고 수차례 말하며 저항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강압적으로 수갑을 사용한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민원인이 현행범 체포를 거부하여 부득이하게 수갑을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60대 여성인 민원인이 체포 당시 도주나 자해의 위험이 없었음에도 경찰관들이 뒷수갑을 채운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갑 사용이 수반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갑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서는 뒷수갑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민원인은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을 뿐이었고 이 상황이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사점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한계를 규정한 헌법상 원칙인데, 일선 경찰관은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체 활동을 반드시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수갑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포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갑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①흉기소지 여부 ②교통장애 유발 여부 ③경찰관 수 ④피체포자 수 ⑤저항여부 등을 종합하여 ①피체포자 포위 ②각종 지시 내지 고지 ③양팔 등 잡기 ④앞 수갑 ⑤탁자나 차량이용 뒷 수갑 ⑥땅에 누여 뒷 수갑 등 최소 침해를 주는 방법을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수갑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2항, 경찰관은 현행범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항, 경찰관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을 사용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련 사례임.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뒷수갑 사용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는 안 돼



“경찰관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수갑을 채운 채로 2시간 동안이나 지구대에 방치했어요. 인권침해를 한 경찰관들을 조치해 주세요.”

식당 주인은 민원인이 주방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민원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였으나, 술에 취한 민원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거부하였다.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후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지구대 사무실에 데리고 갔다.

지구대 도착 후에도 민원인이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욕설 등을 하자 경찰관은 수갑을 찬 민원인을 피의자 대기석 고정연결고리에 연결하여 의자에 앉게 하였다. 민원인은 이렇게 수갑을 찬 채로 2시간 동안 묶여 있다가 경찰서로 인계된 후 석방되었다.

이후 민원인은 경찰관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관들은 민원인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이름과 주소지를 물었으나, 민원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하여 부득이하게 뒷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또한 지구대에 와서도 민원인이 계속 욕설을 하며 돌아다니는 등 공무집행방해를 하였고, 자해 등의 위해 요소가 있을 수 있어 대기석 고정연결고리에 연결하여 앉혔다고 해명하였다.

민원인이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자해를 하지 않았음에도 뒷수갑을 사용하여 민원인의 신체를 구속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잘못되었다.

해당 경찰서에서 제출한 체포 당시의 영상을 보면,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었다. 또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민원인의 도주나 증거인멸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석방보고서에도 ‘민원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는 자로서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30여분 만에 석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다분히 감정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욕죄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이므로 수갑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포 당시 영상자료에서 민원인이 경찰관들이나 제3자에게 항거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지구대 CCTV 영상 자료에서도 민원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자해 등을 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양팔을 잡아서 체포하거나 앞수갑 방식으로 체포했어야함에도 처음부터 민원인에게 뒷수갑을 채웠고,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곧바로 고정의자에 수갑을 연결하였으며, 경찰서로 민원인을 인계할 때까지 이러한 신체적 구금 상황이 계속 되었다. 나아가 장구사용 시 경찰관서장에게 보고 및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장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에도 장구사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민원인에게 처음부터 뒷수갑을 사용한 행위는 민원인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웠을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인을 부당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경찰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사점

현행범 체포 등 인신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민원인의 경우 신병확보 및 모욕죄 수사에 어려움이 없었고, 경찰관 스스로도 혐의가 경미하였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과도한 업무집행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찰관들도 인간인지라 눈앞에서 대놓고 쌍욕을 하는 민원인을 이성적으로 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경찰을 뭘로 아나?” 하는 생각에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상대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상대는 더욱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술이 깬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확률이 거의 100%다.

주취객을 상대하는 일선 경찰관의 어려움은 이해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2항,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뒷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4.2.(수갑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을 사용해야 하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경찰장구를 사용한 때에는 근무일지에 기재해야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시의 보고절차 규칙」 제10조(장구사용의 보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현행법 체포 시 모욕 행위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할 수 없거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 등 현행법 체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고소 절차로 진행하도록 시달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처리절차 개선방안’ (2015. 4. 7.) 관련 사례임.



피의자 조사 시 과도한 포승과 수갑 사용

피의자 조사 때 사고위험이 없으면 포승과 수갑을 사용해서는 안 돼



“경찰서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채 피의자 조사를 받아 인권 침해를 당했어요.”

민원인은 밤 12시경 식당에서 후배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 손님들과 말다툼이 있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민원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는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자 경찰관은 민원인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민원인은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원칙적으로 심야조사가 금지되어 있어 다음날 조사받기로 하고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민원인은 다음날 아침 9시쯤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유치관리계 직원들이 민원인을 형사탐으로 호송하면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했고, 조사실에 도착한 이후에도 양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포승으로 온몸이 묶인 채 조사를 받았다.

이후 민원인은 당시 녹화한 영상을 확인하여 경찰관의 수갑, 포승 등 경찰장구 사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할 때는 피의자의 수갑 및 포승을 풀어야 하지만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높을 때는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경우 도주와 폭행 우려가 있어 수갑과 포승을 사용했다고 해명하였다.

도주 또는 증거인멸, 자해의 우려가 없는 민원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계속 사용한 채로 피의자 조사를 받도록 한 경찰관의 행태는 부당하다.

당시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입감지휘서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는 민원인에 대해 ‘사고위험 없음’, ‘특이사항 없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민원인을 촬영한 사진에는 수갑과 포승이 채워져 있었다.

담당 경찰관은 도주 또는 폭행의 우려 때문에 수갑 등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민원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다음날 아침에 이루어져 민원인이 술이 깬 상태였고, 유치장 입감 후 기록에 따르면 민원인의 사고위험성은 없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 유치장 입감 후 출감할 때까지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거나 욕설을 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민원인에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 것을 잘못했다고 보아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전날 만취한 민원인이 욕설한 것 때문에 다음날 경찰관들이 민원인을 조사하면서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묶은 뒤 조사했다. 민원인으로서의 전날 자신이 한 행동이 생각도 잘 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갑과 포승에 묶여 조사를 받았으니 두려움과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고 더구나 민원인은 이미 술이 깬상태였다.

경찰관서 내에서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 포승을 사용하는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자유로운 진술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도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도망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경찰장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심리적 위축을 이용할 목적으로 조사 시에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일선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때 사고위험이 없으면 포승과 수갑을 채워서는 안 됨을 명심하여 같은 사안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현실적인 도주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협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제2항,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해야 하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640호)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제6항 관련 사례임.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4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현행범 체포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18

현행범 체포절차 준수 미흡

현행범 체포 시 요건·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기록을 정확히 남겨야



“뚜렷한 증거 없이 112허위신고자로 몰아 파출소로 데려갔고, 이에 항의하는 민원인의 말을 무시하고 민원인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모욕감을 준 경찰관을 조치해 주세요.”

“여관 근처에서 고등학생 6~7명이 담배를 피우며 시끄럽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니 빨리 와주세요.”라는 112신고가 파출소에 20여일 동안 10차례 접수되었다. 신고자 전화번호는 모두 같았고, 경찰관들은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현장에 출동했으나 담배피는 불량 학생들을 찾지 못하였다. 그 이후로 여관근처를 자주 순찰했으나 특정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11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몇몇 학생들을 만났다.

경찰관들과 학생(민원인)의 실제 대화 내용을 인용해 봤다.

경찰관 : “학생들 중에 112신고한 사람 있어요?”

민원인 : “제가 했는데요.”

경찰관 : “그러면 불량 학생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랑 함께 찾아볼까? 여러 번 출동했지만 한 번도 못 만나서 말이야.”

민원인 : “그, 그건 안 되겠는데요. 개네들이 보복하면 어떡해요?”

경찰관 : “학생, 허위신고한 거 아니야? 같은 번호로 열 번 넘게 똑같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우리는 한 번도 불량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우리랑 같이 파출서로 가져와야겠어.”

민원인 : “저, 허위신고 한 거 아녜요. 불량 학생들이 예전에도 있어서 불편해서 신고했단 말예요. 허위신고 절대 아니라고요!”

경찰관 : “에이 시끄럽고. 경찰이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잘못됐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민원인이 항의했지만 경찰관들은 허위신고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민원인을 현행범으로 파출소로 데려갔고 민원인의 주장을 무시한 채 허위신고자라고 확신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민원인의 휴대폰을 열람한 후에야 112신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부당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권익위에 손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들은, 같은 번호로 10회 이상 똑같은 112신고가 접수되어 허위신고로 판단하고 민원인이 자신이 신고를 했다고 하여 허위신고자로 특정하였다. 민원인이 인적 사항과 파출소 동행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는데, 민원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민원인이 아니라 같이 있던 친구 중 한 명이었고, 민원인도 친구의 휴대폰으로 112신고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민원인을 집으로 가도록 하였고,

현행범인체포서 및 석방보고서 등의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근무일지에 기록하였다고 답변했다.

민원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사유가 없음에도 범행사실 확인 없이 체포한 출동 경찰관의 행동은 부적절하다.

출동 경찰관은 민원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범행사실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민원인이 허위신고 처리에 항변하며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 부정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였으나, 당시 민원인이 도주할 우려 등 현행범 체포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경찰관은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일지에도 현행범 체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민원인의 현행범 체포사실을 공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경찰관들은 민원인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응대하였고, 체포구속적부심사권과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도 소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출동 경찰관의 이런 행동을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았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에 대한 공적인 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업무 처리를 한 출동 경찰관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민원인의 주장처럼 실제로 불량 학생들이 현장에 있어서 신고했는지, 아니면 경찰관의 주장처럼 허위신고였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다. 열 번 넘게 같은 신고를 받고도 허탕을 쳤으니 경찰관들로서는 짜증이 났고, 열한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만난 일행 중 한 명

(민원인)이 자신이 112신고했다고 했으니 경찰관들은 민원인을 허위신고자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관이 민원인을 허위신고자로 체포하자 민원인은 허위신고가 아니라고 항변하였으나, 경찰관이 민원인의 말을 무시하여 민원인은 불만의 표시로 인적 사항을 말하지 않자 경찰관이 민원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일선 경찰관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절차 위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현행범인을 체포했을 때는 체포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82조(현행범인의 체포) 제1항,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는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고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하는 같은 규칙 제83조(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제2항 관련 사례임.



19

현행범 체포 시 반말과 모욕적 언행

현행범이라고 해서 반말과
모욕적인 언행을 해서는 안 돼



“경찰관이 모욕적인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동료 경찰관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민원인은 ‘누군가 이웃집에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또다시 신고를 하여 경찰관 두 명이 출동했다.

민원인은 출동 경찰관들에게 “그동안 112신고를 열 번이나 했는데 이제야 나타났군.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뇨?”라고 말하자 A경찰관은 “그걸 왜 우리한테 따지는 거요? 112 센터에 가서 따져야지.”하고 말하였다. 민원인은 “다 같은 경찰이잖아!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뭐야?”라고 말하여 A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민원인은 순찰차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A경찰관이 “당신을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 하겠소.”라고 말하고 민원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송하는 중에 A경찰관이 운전을 험악하게 하자 민원인이 “너무 험악하게 운전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였고, A경찰관은 “야! 이 새끼야 너 백수라며? 좋겠다. 백수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민원인은 모욕감을 준 경찰관을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의 문을 두드렸다.

이에 대해 A경찰관은, 민원인이 욕설을 하고 밀치고 순찰차의 운행을 가로막아 민원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민원인이 “너 경찰관 맞냐? 너 따위가 무슨 경찰관이냐? 어떻게 저런 새끼를 경찰관으로 뽑냐?”라고 하는 등 모욕적인 언사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해 A경찰관은 “그럼 당신은 무직 아니신가요? 그럼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경찰관에게 욕하고 시비 걸면 되겠습니까?”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였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반말 등 부적절한 언행과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된다.

해당 경찰서가 제출한 동영상에 따르면, 민원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고 내용과는 상관없는 112신고 접수 문제에 대해 항의했고, A경찰관은 ‘거기 가서 따져야지 왜 우리한테 따지냐’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 두 사람 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였고, 구경하던 주민들이 두 사람을 말리기도 하였다. 물론 민원인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장시간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경찰관이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민원인을 향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A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이 민원 사례에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112신고를 여러 번 하였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 불만이 쌓여 있었던 듯하였고, 출동 경찰 입장에서는 112신고 내용과는 상관없고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항의를 하여 짜증이 났을 것 같다.

그런데 경찰관이 민원인을 고압적으로 대하였고 민원인의 항의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모욕죄로 체포하겠다는 등 강압적인 모습도 보였다. 오죽했으면 주변에 있던 이웃들이 경찰관에게 그만하라고 했겠는가.

권익위에 신청되는 민원의 상당 부분이 담당 경찰관의 고압적인 태도나 부적절한 언행에서 비롯된다.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하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 관련 사례임.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수사진행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20

성폭력 사건 전담수사관 처리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담 수사관이 수사해야



“성폭력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에 찾아갔는데 남자 경찰관이 상담하였고, 피해 사실을 얘기했을 때 경찰관이 웃기도 하여 수치스럽고 황당했어요.”

성폭력 피해자인 민원인은 성·가정폭력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사에게 피의자를 고소하여 처벌 받길 원하니 사건 접수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상담사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하자, ‘지금은 여자경찰관이 없지만 사건 접수는 가능하니 방문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민원인은 상담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고 상담사가 남성 경찰관에게 민원인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가도 되는지 묻자 경찰관은 장소가 좁으니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상담사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남성 경찰관이 조사 중 민원인의 말을 끊으며 가르치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때는 웃기까지 하여 민원인은 너무 수치스럽고 황당하였다.

민원인은 다른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싶다고 말하였지만 경찰관은 이곳에서 조사받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도 사건 접수를 받아주지 않아 민원인은 고소사건을 검찰에 접수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경찰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의 휴가로 부득이하게 민원인의 동의하에 피해사실 확인 및 고소 절차 안내 등 단순 상담을 한 것이고, 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고의로 웃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지가 다른 경찰서 소관이라 민원인 진술조서 작성 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할 것이고 관할 경찰서에 접수한다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던 것이며, 피해신고 접수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성폭력범죄 조사의 경우 여성 전담 조사관이 말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남성 경찰관이 조사를 하였고, 조사 당시 민원인의 동의하에 단순 상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원인으로 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청취 등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 상담으로 보기 어렵고 이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아닌 경찰관이 조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부당하게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사점

‘미투’의 영향으로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경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일반범죄 피해자처럼 대한 것이 문제였다. 경찰관은 섬세한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해야 함에도 피해자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피해 사실을 듣는 중에 웃기까지 했다. 이러한 경찰관의 태도는 가뜩이나 위축된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해당 경찰관은 상담사가 접수가능 여부를 문의했을 때 성범죄 전담 경찰관이 출근하면 방문하도록 안내를 하거나 단순히 고소장만 접수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함께 온 상담사라도 동석하게 했어야 옳다.

성폭력 상담 경찰관은 부득이하게 또는 선의를 가지고 조사에 임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수치심 등을 유발한다면 제2차, 제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고 관련 규정을 지키며 조사해야 한다.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제2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성폭력 피해여성은 여자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218조(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의 조사) 제2항 관련 사례임.



아동학대사건 조사 시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아동학대사건을 조사할 때 피해 아동과 가해 의심자를 엄격히 분리하여 조사해야



“경찰관이 아동상담사에 의뢰하여 3세 아들의 아동학대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학대 의심자와 아들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조사를 받게 했어요.”

민원인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이하 피고소인)와 별거하면서 아들을 3~4일씩 나누어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소인과 그의 가족이 3세인 아들을 구타하고 종교를 강요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지속적인 학대를 하여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상담사에 의뢰하여 아들을 상대로 아동학대조사를 하게 했는데, 당시 아들은 피고소인과 함께 아동상담사와 약 30분 동안 면담했고, 상담

내내 아들은 피고소인 품에 있었고 즐기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대답은 피고소인이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진행되었다.

이에 민원인은 피고소인과 아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조사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민원인의 아들을 조사한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라 아동상담사였고, 아동의 진술을 녹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의 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므로 분리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민원인이 제기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아들의 신체에 상처나 멍 등 학대행위의 증거가 전혀 없었고, 아동상담사도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여기고 있고, 양육권 분쟁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하였다.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의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원칙이므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사규칙」등 관련 규정에서는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 의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설령 경찰관이 직접 조사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의심자를 분리하여 조사하도록, 조사를 의뢰한 기관에 분명히 안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고 판단된다. 조사기관은 경찰관의 조사를 대행한 것이므로 경찰관의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권익위는 민원인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상담사가 아들과 아동학대 피고소인을 분리하지 않고 조사하도록 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 경찰청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상담사 등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 시 명확한 진술조력인 및 신뢰보호자 동석 범위, 사전 고지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등을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사점

위 민원 사례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가 양육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고소한 것인데, 경찰관은 아이에게 학대 정황이 전혀 없어 피고소인인 엄마와 함께 조사를 받게 하는 것에 저항감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해 지기 위해 거짓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했을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 조사 원칙에 따라야 했었다.

아동학대사건은 피해 아동과 가해의심자 등과의 분리수사가 원칙이므로, 설령 경찰관이 아동보호시설 관계자에게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도 시설 관계자가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 등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설명과 세밀한 조치가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받아야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6항, 경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신문을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253조(피해 아동 조사시 유의사항) 제4항 관련 사례임.



22

스마트워치 제공 시 문제점 미고지

신변보호 장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할 때 건물 내에서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를 했어야



“경찰은 위치추적이 제대로 되지 않는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지급했고, 사건 당일 느장 출동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민원인의 어머니(피해자)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무단침입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보호 대상자로 결정하고, 피해자에게 버튼만 누르면 경찰이 3분 만에 출동한다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가 찾아오면 주방 뒷문으로 도주하려고 도주로를 만들어 놓았으나,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후부터는 경찰관이

출동하여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안심하고 지냈다. 그리고 4일 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왔을 때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누른 후 가해자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 가해자를 피하지 않고 출동 경찰관을 기다렸다. 그러나, 경찰관이 받은 스마트워치 신고 위치는 통신사 기지국으로 표시되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가게가 아닌 집으로 출동하였고 퇴근시간이라 도로가 정체되어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인 가게에 도착하기까지 11분이 소요되었다. 그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9구급차가 와서 피해자를 구호조치하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후 민원인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해줄 것과 위치 추적도 제대로 되지 않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여 경찰 출동에 혼선을 일으킨 것에 대해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도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퇴근 시간이라 도로 정체가 심하여 피해자의 집을 거치지 않고 사건 현장인 가게로 바로 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막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성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사건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않아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신고 시각으로부터 약 6분 후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긴급하게 출동했어야 하고 비록 교통정체 구간을 지나가더라도 사이렌이나 손짓으로 긴급한 상황을 알리면 다른 차량들이 양보했을 것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출동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그리고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주간근무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는데, 스마트워치가 신변보호 대상자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할 것으로 알고 있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야간근무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가게로 출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야간근무 경찰관들에게 주간 순찰 시 피해자가 가게에 있었다는 정황을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마트워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가게가 아닌 집으로 출동하여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되었던 것이다.

또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스마트워치가 실내나 지하 등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는 위치가 기지국으로 표시되므로 통신상의 오류가 있고 위치값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여 가게 밖으로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경찰관을 기다리다 사망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피해자에게 신변보호 장치인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면서 건물 내에서는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위치를 제대로 업무 인수인계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경찰청에는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건물 내에서는 위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설명하고, 스마트워치 관련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사점

보복범죄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버튼만 누르면 경찰에 자동으로 신고 위치가 표시되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스마트워치의 성능에 대한 상세한 이해가 부족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경찰관은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할 때 반드시 스마트워치의 성능을 제대로 파악한 후 문제점이나 오류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휴대전화 또는 위치확인 장치의 GPS 등을 활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통신 환경에 따라 위치확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한 위치확인 장치(웨어러블 기기) 지급에 관한 운영 지침」 [별지 1호] 관련 사례임.



23

수사개시 통보 대상 미확인

수사개시통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통지해야



“수사개시통보 대상이 아님에도 경찰관이 직장에 알려 명예를 훼손
하였고,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됐어요.”

민원인은 대학교 시간강사로, ○○회사를 비방하는 1인 시위를 하였다.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사립학교법」상 민원
인과 같은 사립대학교 시간강사는 수사개시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경찰관은 부당
하게 대학교 총장 등에게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시간강사 위촉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민원인은 경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
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사립대 시간강사도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해당 대학 총장에 수사개시통보를 하였다고 답변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범위에 대한 착오로 부당하게 수사개시통보를 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끼친 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된다.

「사립학교법」상 조교수 이상만 교원에 해당하고 민원인과 같은 사립대학교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수사개시통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확하였음에도, 경찰관은 수사개시통보 대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사립학교 교원의 범위에 대한 착오로 해당 대학 총장에게 민원인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수사개시통보를 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경찰청 수사과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회신을 권익위에 보내왔다.



시사점

현재 법에 규정된 사립학교 교원의 범위는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강사는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개시통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담당 경찰관이 착오로 해당 대학 총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한 것이다. 이 통보로 인해 민원인은 명예훼손은 물론 시간강사 위촉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

일선 경찰관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소속 기관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하는 것은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사개시통보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한 후 통보해야 한다.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 수사기관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사립학교의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관련 사례임.



수사지연 시 수사진행상황 미통지

피해자의 알권리를 위해 당사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고소사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소극적으로 응했고, CCTV 자료와 녹취록을 제출했는데도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답답합니다.”

민원인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님 3명이 민원인에게 화장실이 더럽다며 욕설하고 때릴 듯한 제스처와 온갖 모욕적인 말을 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며칠 후 민원인은 고소사건에 대해 조사받으러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경찰관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니 그냥 넘어가시죠.”라고 너무나 소극적인 태도로 응대하였다.

그리고 민원인이 CCTV 자료와 녹취 등의 자료를 증거물로 제출했는데도 5개월이 지나도록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답답한 마음에 권익위에 손을 내밀어 담당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 2명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던 중 병가를 받아 잠시 중단되었으나 복귀 후 수사를 계속하여 피의자 신원을 확보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수사 기간이 늘어날 때 민원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고, 수사부서장에게 ‘수사진행 상황보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제때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민원인에게 상대방이 술에 취해 한 행동이니 넘어가라고 얘기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고소사건 처리를 느장 진행하고, 이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며, 경찰관서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된다.

경찰관은 사건을 인계받은 후 5개월 이상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민원인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해 한 차례도 통지하지 않았다. 민원인을 조사한 지 2개월 후에 피의자 한 명을 조사하였고, 또다시 2개월 후 민원인이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다른 한 명의 피의자를 조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찰관이 병가 등으로 인해 사건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웠다면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 따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 지휘를 건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권익위는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지연처리하고,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여 있고, 몸은 아프고... 당시 담당 경찰관은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사건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고소사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매일매일 궁금해 하며 지냈을 것이다. 담당 경찰관은 민원인의 걱정을 헤아려 몸이 힘들더라도 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했고,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했어야 했다.

일선 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 등 처리절차를 고소인 등에게 제때 알려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48조 제1항,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해야 하는 같은 규칙 제2항,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제1항 관련 사례임.



25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청인 미확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시 신청인이
‘고소인’인지 ‘피고소인’인지를 확인해야



“담당 경찰관이 실수로 분쟁 중인 고소인에게 피고소인(민원인)의 사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어 피해를 입었어요.”

민원인은 형사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신분이었다. 그런데 고소인이 경찰서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사실확인원’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자 담당 경찰관은 업무 미숙으로 민원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와 혐의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원을 잘못 발급하여 주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잘못 발급된 사실확인원으로 인해 도덕적·형사적 흠집이

발생하여 OO회사로부터 중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으니, 조사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사실확인원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에 불과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수정발급이 가능하다고 해명하였다. 당시 고소인은 이미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항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공증력을 갖고 개인 간의 보상관계 및 쟁송에 결정적인 정황증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발급 관리에 소홀한 경찰관의 잘못이 크다.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발급한 사실확인원은 고소인이 소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은행에 제공된 것이고, 「One Stop 사실확인원 발급 관련 지침」에 의하면, 사실확인원은 일단 발급되면 공증력을 갖게 되고 사인간(私人間)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개인의 보상관계 및 쟁송에 결정적인 정황증거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발급 전 신분확인 등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반영한 사실확인원을 발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사실확인원을 잘못 발급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시사점

사실확인원은 당사자가 피해구제 등의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신청을 하는 것인데, 이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아직 재판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 기재될 수도 있다.

그런데 분쟁 중인 사건에서 자신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상대방에게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은 얼마나 놀랐을까?

사실확인원은 일단 발급되면 공증력을 갖게 되므로 다툼 중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관의 작은 실수가 당사자에게는 크나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일선 경찰관은 사실확인원을 발급할 때 발급신청자가 누구인지, 또한 그 사용 목적에 맞게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건사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사실확인원 발급요청 시 발급하지 않는다는 「One Stop 사실확인원 발급 관련 지침」Ⅲ, 사실확인원 발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대리인의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위조·변조 여부 및 관인·발급일자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한다는 같은 지침 Ⅵ. 유의사항 관련 사례임.



쌍방폭행 고소인에게 사건처리결과 미통지 폭행의 고소인이 다시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더라도 처리 결과의 통지 등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



“경찰관이 폭행 고소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만 유리하게 진행했고, 처리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민원인은 친척(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이 지인에게 자신을 헐담한 것으로 오해하고 상대방의 집으로 찾아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 서로 목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쌍방 폭행을 하게 되어 민원인은 상대방을 고소하였다.

경찰관은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2회 미루더니 민원인에 대한 진술조사는 10분만 하였고, 상대방이 동종전과가 있는데도 없다는 등 허위진술을 했음에도 묵과하였다. 또한 피의자 조사 후 민원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다름에도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등 부실

수사를 하였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등을 문자나 우편물로 통지해주지 않았다.

민원인은 부당하게 업무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민원인과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실시하였고 민원인의 이의 등은 없었으며 수사과정확인서에 자필서명까지 하였고, 민원인이 처음에는 고소인이었으나 조사 과정 중 쌍방 폭행이 확인되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고, 당시 「범죄수사규칙」에는 피의자에 대한 사건 관련 통지 규정이 없었으며, 이 규정은 이후에 추가된 사항이라고 해명하였다.

민원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 설령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폭행사실이 확인되어 민원인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송치 당시의 「범죄수사규칙」에서도 고소인에 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2011년 경찰서에 하달한 ‘피의자에 대한 사건진행 상황 통지 지침’에서도 사건 송치 시 3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경찰의견 및 송치받는 관서를 통지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민원인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민원인의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위 사례의 민원은 경찰관이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민원인의 신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민원인은 쌍방폭행 혐의로 고소인이자 피의자 신분이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동일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더라도 민원인의 고소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인 민원인은 경찰로부터 사건결과 등을 통지받을 권리가 있다.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제1항, 사건 송치 시 3일 이내에 피의자에게 경찰의견 및 송치받는 관서를 통지하도록 한 ○○지방경찰청장(2011년)이 하달한 ‘피의자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통지 지침’, 수사를 종결했을 때는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2018. 1. 2. 경찰청훈령 제858호로 개정된 「범죄수사규칙」 제204조 제2항 관련 사례임.



27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거부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조서 열람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돼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조서 열람을 요구하자, 담당 경찰관은 ‘필요한 답변만 조서에 남긴다.’는 등 고압적 태도로 거부하며 방어권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민원인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사이버수사팀에 출석하여 약 1시간 30분 정도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신문조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의도와 다르게 기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관에게 더 이상 조사 받기 싫으니 수사관 교체 요청과 조서 확인 후 서명·날인을 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부하였다.

민원인과 경찰관의 실제 대화한 내용을 인용해 봤다.

민원인 : 제가 진술한대로 답변 안 해주셔서 조사 마칠 거구요. 그대로 조서주시면 작성하고 갈 테니 조서주세요.

경찰관 : 가서 다른데 가서 얘기하세요. 청문에 가서 얘기하세요. 수사관 교체를 하던지 알아서 하세요.

민원인 :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은 저는 그것을 기록에 남겨야겠어요. 제 조사 기록에 남겨야겠어요.

경찰관 : 알아서 다른 방법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조서는 제가 작성하는 거예요. 청문 가서 얘기하세요.

민원인 : 그냥 제가 가버리면 이 과정 같은 게 기록에 안 남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경찰관 : (민원인 말을 끊으며) 더 이상 제가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본인이 조사 중단을 했고 저한테 조사 받기를 거부하셨고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어쨌든 여러 방법으로 내면 되잖아요.

경찰관 : 기록을 첨부하고 안하고는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중략)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 지는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기록에 어떤 내용을 넣는지도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가서 법적대응하세요.

민원인 :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록에 넣는 것도 본인 자유고 어떤 진술을 청취하는 것도 본인 자유고 그러면 수사관님이 질문하는 대로 네 아니요만 대답하면 되네요.

경찰관 : 오늘 얘기한 것은 증거로 안 쓸 거라 저는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록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거예요.

이후 민원인은 자신을 고압적으로 대하며 방어권을 무시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익위에 손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민원인이 경찰관의 질문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진술

하고, 전부 기록하지 않으면 자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며, 조사 중단 및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겠다고 하여서 민원인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진술조서는 진술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수사관이 교체되어 새로운 수사관 으로부터 새로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민원인이 조사받은 해당 조서에 대한 피의자의 열람 및 서명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피의자가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조서 열람을 거부하는 등 수사절차를 위반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응대한 담당 경찰관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형사소송법」제244조 및 제244조의4에 따르면 경찰관은 진술서 작성 시 진술자에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진술 기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조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 과정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록하고, 이를 수사 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문조서 열람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및 조서 작성에 대한 피의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후 수사과장의 지시로 조서에 날인 및 간인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또한 민원인의 열람 요청에 대한 경찰관의 응대 과정에도 ‘어떤 내용을 조사하고 기록에 넣는지는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가서 법적 대응하세요.’ 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타당한 민원 응대나 정당한 공무수행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타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거부하고 이를 기록·편철하지 않으려고

했던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사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부당하게 조서 열람을 거부하고 수사기록에도 남기지 않는 행위는 수사를 받는 사람의 공격권과 방어권을 무시하는 매우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70조(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44조의4 및 「범죄수사규칙」 제70조 제2항 관련 사례임.



28

동의나 보강수사 없는 가택 수색

영장이 없으면 상대방의 ‘동의’나
별도의 ‘보강수사’ 후 집안 수색을 해야



“절도 용의자와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가택 수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위력·협박을 당했어요. 억울합니다.”

슈퍼마켓에 작업복을 입은 절도범이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관들은 현장 CCTV에서 발췌한 용의자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토대로 수배전단지를 작성하여 현장 일대를 탐문수사 하였고, 민원인이 수배 전단지의 용의자와 닮았다는 주민의 신고로 민원인의 집을 찾아갔다.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이 사진 당신 맞지? 사진 속 작업복이 집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겠으니 문 좀 열어줘야겠소.”라고 말하였고, 민원인은 “전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고요.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녜요.”라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은 “범인이 아니면 왜 집을 안 보여주나. 잘못된 게 있으니까 안 보여 주는 거 아니야? 거부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라고 말하자 두려움을 느낀 민원인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들은 민원인의 집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사진 속의 작업복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 종료 후 경찰관들은 아파트 내부의 CCTV를 통해 민원인의 출퇴근 모습과 사건 발생 시간 등을 대조한 결과 민원인의 알리바이가 성립됨을 확인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용의자와 용모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민원인의 집을 수색한 담당 수사관들을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실제 범인이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 민원인이 진범의 모습과 흡사하여 민원인이 범인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으며, 집 수색은 신분을 밝히고 민원인의 동의를 구한 후 이루어졌다고 해명하였다.

용의자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바로 가택 수색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수색을 진행한 경찰관들의 행동은 잘못이다.

민원인의 집안 수색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들의 말에 겁이 난 민원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경찰관들은 민원인의 집을 수색 전에 거주지 CCTV 분석 등 보강수사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바로 민원인의 집을 수색하였다. 그리고 당시 정황이 보강수사를 할 수 없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경찰관들이 수색을 위한 민원인의 명백한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바로 민원인의 집을 수색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과거와는 다르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경찰관이 임의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용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드물게 권익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들이 ‘협조가 되지 않을 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수색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는 그 수단이나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용의자 또는 피의자의 권익 침해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일선 경찰관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6조(임의 수사) 제1항, 임의수사를 위해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는 「범죄수사규칙」 제6조(임의 수사) 제2항 관련 사례임.



강제수색 경찰관 소속과 성명 미고지

집안 수색을 할 때 소속·성명을 명확히 알려줘야



“경찰관이 집안 수색을 하면서 소속 및 성명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경찰관을 사칭한 깡패들이 왔다 간 줄 알고 불안에 떨었어요.”

민원인이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 소리가 울려 나가 보니 경찰관이라는 남성 2명이 찾아와 민원인에게 “○○○씨 집이 맞지요?”라고 물어서 민원인은 “네. 그렇긴 합니다만, 무슨 일인지요?”라고 물었으나, 남성 두 명은 소속과 성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들어와 집 안을 수색하였다. 민원인은 당시엔 경찰관이라는 말을 듣고 집 안을 수색하는 것에 대해 잠자코 있었지만 나중에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이 깡패를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민원인은 경찰관을 사칭한 깡패들이 민원인의 집을 뒤흔든 것은 아닌지 의심하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건 관할 A경찰서를 찾아가 “혹시 수배자 ○○○의 집에 경찰관을 보낸 적이 있나요?”라고 문의하였는데, 민원실 경찰관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라고 대답하여 민원인이 “몇 일전 집에 경찰관들이 찾아와 수색을 해서요. 다른 확인 방법이 없을까요? 그 경찰관들 얼굴을 기억합니다.”라고 말하자, 민원실 경찰관은 “저희 경찰서 경찰관들 사진을 보여 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하여 민원인은 사진까지 확인했으나 해당 경찰관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민원인은 혹시나 해서 고소인의 거주지 관할인 B경찰서를 뒤져보니 당시 방문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민원인은 집안 수색 시 소속 등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민원인에게 경찰관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가택 수색의 목적 등을 사전 설명하여 동의를 받아 수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민원인이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경찰서를 여러 번 방문한 것으로 보아 해당 경찰관이 사전 고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경우 상대방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경찰관에게 있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사전 고지를 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민원인은 A경찰서를 2회, 또 다른 B경찰서를 1회 방문하여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였는지 여부를 알아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만약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시 소속 및 성명 등을 명확히 고지하였다면 민원인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B경찰서까지 방문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권익위는 민원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소속·성명 등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찰관들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시사점

민원인은 지인으로부터 ‘고소인이 깡패를 보낸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집을 수색한 사람들이 경찰관을 사칭한 깡패들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두 군데의 경찰서를 총 3번이나 방문하여 경찰관이 수색한 것임을 확인한 후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경찰관이 소속과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었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선 경찰관은 집안 수색을 하면서 소속 및 성명 등의 고지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인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는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6조(임의수사) 제1항, 경찰관이 임의수사를 위해서 상대방의 승낙을 구할 때는 승낙을 강요하거나 강요의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는 태도나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는 「범죄수사규칙」 제6조(임의수사) 제2항 관련 사례임.



30

지명수배 해제 지연

수배자를 검거하면 즉시 수배를 해제해야



“경찰 조사 후 검사의 불구속 지휘로 석방되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지명수배 해제를 이틀이나 늦게 하여 회사에 알려지는 등 곤란에 처하게 되었어요.”

민원인은 지명수배 되었다가 경찰서에 체포되었고 조사받은 후 검사의 불구속 지휘로 당일 밤에 석방되었는데, A경찰관은 지명수배를 즉시 해제하지 않고 이틀이 지난 뒤에야 해제하였다. 그 사이에 다른 B경찰관이 지명수배 해제 사실을 몰라 지명수배자 일제 점검 기간중에 민원인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물어보아 민원인이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민원인은 지명수배를 즉시 해제하지 않고 민원인의 회사에 전화하여 민원인을 곤란하게 한 경찰관들을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청하였다.

이에 대해 A경찰관은 민원인이 석방 후 이틀 늦게 지명수배를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B경찰관은 민원인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인을 체포하기 위해 민원인의 회사로 전화해서 직장 상사에게 경찰의 신분을 밝히고 근무 여부를 물었으나, 민원인을 찾는 목적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지명수배 해제를 지연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한 경찰관의 행동은 잘못이다.

「범죄수사규칙」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때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A경찰관은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배를 해제하였다. 그리고 그 48시간 동안 B경찰관이 민원인을 체포하기 위해 민원인의 회사로 전화해 직장 상사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고 민원인의 근무 여부를 물었고 당시 민원인을 찾는 목적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원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민원인의 지명수배를 즉시 해제하지 않아 「범죄수사규칙」 제184조제1항을 위반한 A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경찰관은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하나, 48시간이 지난 뒤에 해제하는 실수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경찰관이 지명수배자 확인을 위해 민원인 회사에 전화하여 회사에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민원인은 불이익이 받을까봐

전전긍긍했었다.

위 사례의 경찰관처럼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겠지’ 하며 방심하는 사이 지명수배자가 이중으로 검거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수배 또는 통보를 해제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184조(수배 등의 해제) 제1항 관련 사례임.



촉탁수사 의뢰 절차 불이행

조사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촉탁수사를 하였다면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



“바쁜 일정으로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위해 방문했으나 촉탁 의뢰가 되어 있지 않아 헛걸음을 했어요.”

어느 날,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가 들어왔으니 A경찰서로 출석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민원인은 “제가 업무가 너무 바빠서 A경찰서까지 가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B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 안 될까요?”라고 요청하자 경찰관은 “그렇게 하시지요. B경찰서에 수사를 촉탁하겠으니 그쪽으로 가서 조사 받으십시오.”라고 말했으나,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에 B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촉탁의뢰 처리를 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원인은 B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A경찰서로부터 촉탁 의뢰가 된 사실이 없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민원인은 촉탁의뢰사건 진행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하였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업무 미숙으로 촉탁의뢰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업무 미숙으로 고소사건 촉탁 절차를 미준수한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A경찰서 소속 담당 경찰관은 고소사건 촉탁 의뢰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촉탁 의뢰한 민원인에게 B경찰서에 방문 시 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고소사건을 B경찰서에 수사 촉탁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B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A경찰서로부터 수사 촉탁의뢰가 되지 않아 조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민원인의 고소사건을 B경찰서에 촉탁의뢰 하였고, 민원인은 일주일 뒤 다시 B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미숙지하여 고소사건 촉탁 절차를 미준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시사점

민원인은 중고차 매매상으로 업무가 매우 바빠서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자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수사 촉탁의뢰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고소사건을 촉탁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두 번이나 경찰서를 찾아가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일선 경찰관은 순환근무 등으로 업무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미숙지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음을 명심하고 본 민원 사례와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사촉탁은 촉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촉탁서에 의해야 하고 수사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 수사기록 원본 또는 사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첨부하여 발송해야 하는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2조(수사 촉탁 절차) 제1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42조(고소·고발의 접수) 제1항 관련 사례임.



32

수사협조자 신뢰보호 미흡

수사 협조자와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경찰의 요청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고, 검거 전에 제 신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누누이 당부했지만 경찰관은 약속을 어기고 제 신변이 드러나게 했어요.”

OO회사 직원인 민원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관이 “OO 회사에 물품공급자인 피의자를 검거하려는데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요청하여 민원인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물었고, 이에 경찰관은 “피의자가 선생님 회사를 방문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민원인은 겁이 났지만 경찰업무에 대한 협조 의무감에서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OO

회사에 물품납품하러 오도록 하였고, 경찰관에게 “제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범인 검거를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하자 경찰관은 “그 문제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경찰관은 당일 피의자가 물품납품을 하고 ○○회사 정문을 나가자마자 즉시 검거하였고, 체포과정을 지켜보던 민원인은 두려움과 함께 경찰관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이후 민원인은 경찰서에 전화하여 항의하고 형사팀장에게 “좋은 뜻으로 경찰에 협조했으나 약속을 어기고 제 신변이 노출되게 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주세요. 그리고 저에 대한 신변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였는데, 형사팀장은 “예, 저희 잘못은 인정합니다만, 참 어지간하시네요. 제게도 말할 기회를 주세요.”라고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고, 사과에 진정성이 없었다.

화가 난 민원인은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보내자, ○○지방경찰청에서는 민원인에게 체포협조 공로로 포상을 하겠다고 했으나, 민원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 해당 지방경찰청은 당일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회사 앞에서 검거한 것이고, 후문에 경찰관을 배치하지 않은 점이나 형사팀장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후 민원인은 범인 체포와 성과에 급급해 수사협조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범인검거에 협조한 국민의 신변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범인 검거에 급급해 민원인과의 약속을 어긴 경찰관의 잘못이 크다.

경찰관은 미리 피의자를 체포할 장소를 물색해 놔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나가려는 돌발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일반 국민이 경찰관의 범인검거에 협조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므로 경찰관은 검거과정에서 협조자와의 신뢰관계를 보다 중시하여 더 많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후문에 배치하는 등 치밀한 현장검거계획을 세웠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전노력이 보이지 않았고, 이후 형사팀장도 민원인에 대한 민원응대 과정에서 언행이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권익위는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협조자인 민원인과의 사전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시사점

어렵게 용기를 내어 범인 검거에 협조했는데, 경찰관의 잘못으로 자신의 신분이 범인에게 노출된 민원인은 당황, 분노, 두려움 등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어려운 용기를 내어 범죄인 검거 등에 협조를 한 국민과의 신뢰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고 더구나 신변보호 요청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다가 사과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다. 신뢰는 어느 사회나 조직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은 범죄신고자 등이 피의자 기타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746호) 제3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제1항, 경찰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같은 규칙 제4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제1항 관련 사례임.



증거 추송 누락

수사 결과와 다른 새로운 증거는 반드시
추송해야 하고 누락해서는 안 돼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해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 무혐의로 송치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민원인은 ○○진료과 원장을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기관 이중개설, 과대 의료광고 혐의로 고소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진술을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잘못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의도적으로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준 경찰관을 조사해 달라고 권익위에 손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민원인이 2년 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송치된 바 있고, 이를 참고하여 피의자들의 행위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전화로 질의했는데 담당자가 ‘AMTS(Auto Microneedle Therapy System)는 일반인도 소지할 수 있고, 바늘이 0.5cm 이상 피부에 침습할 경우에만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의도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민원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담당 경찰관은 수사를 미흡하게 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내용과 다른 사실을 회보 받았음에도 추송하지 않았다.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담당 경찰관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신문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담당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질의 내용에 대해 회보받았지만, 회보 내용이 전화조사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에 추송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실조사를 미흡하게 하고, 수집된 증거를 추송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위 사례의 경찰관은 2년 전에 있었던 동일한 고소사건이 불기소의견(무혐의)으로 송치되었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만 믿고 무혐의로 송치하였다. 하지만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도착한 회신문에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이 왔다. 이럴 경우 사실 관계를 검찰에 추가적으로 송부해야 하나 그러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신을 심어 주었다.

기초수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중요한 사실이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관련자에 대한 문답조서 작성 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사건을 검찰 송치 후 송치의견과 다른 증거자료가 나오면 반드시 추송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 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 피의자 이외 관계자를 조사할 때는 되도록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66조(직접진술의 확보) 제1항,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입수하였을 때는 신속히 추송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193조(송치 후의 수사와 추송) 제2항 관련 사례임.



34

임의제출물 반환 절차 미준수

임의제출물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돼



“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해서 휴대폰을 제출했는데 한 달 가까이 돌려주지 않아 아버지의 임종 소식을 제때 못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민원인이 채팅어플에서 만난 남자(피의자)의 숙소를 찾아갔는데, 피의자가 민원인을 성추행하고 민원인을 주먹과 발로 폭행을 하였으며, 민원인도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손톱으로 두 차례 핏줄을 찔렀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의자는 민원인을 때린 사실을 시인하였고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여 미란다원칙 고지 후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민원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담당 경찰관은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원인의 휴대폰을 제출토록 하였다. 이후 민원인이 피의자와 합의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경찰관은 돌려주지 않았다.

그 후 민원인은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없이 생활하려니 너무 불편해요. 제발 돌려주세요.”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찰관은 “임의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돌려줄 수 없습니다.”, “경찰관은 필요할 때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동의해 놓고 왜 이러는 겁니까?”라고 반복적으로 말하였다.

그 후에는 민원인의 독촉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민원인은 아버지의 임종도 연락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후 민원인은 개인의 휴대폰을 한 달여간 강제적으로 압수한 경찰관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수사 중 피의자와 민원인 모두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했고 증거물 분석에 동의하였으며 ○○지방경찰청에 증거물 분석을 의뢰하였고, 민원인에게 증거물 분석이 끝날 때까지 돌려주지 못함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으며, 분석이 끝난 후 바로 반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임의제출물에 대한 환부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된다.

민원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증거물 분석에 동의하였더라도 ‘임의제출 증거물’에 대하여 환부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있다가 증거물 분석이 끝난 후에야 검사의 지휘를 받고 환부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권익위는 민원인의 임의제출물 환부 요청을 받고도 신속히 반환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민원인은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제출과 증거 분석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은 한 달 가까이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아 아버지의 임종 소식도 제때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때를 제외하고는 휴대폰과 함께하며, 몇 시간만 휴대폰이 없어도 불편함을 느낀다. 더구나 젊은 여성인 민원인이 느꼈을 불편함은 고통에 가까웠을 것 같다.

일선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거나 압수장물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치하여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하여 청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압수물 환부(또는 가환부) 지휘건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131조(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제1항 관련 사례임.



증거영상자료 보존기간 경과 등 관리 소홀

영상자료는 영상보존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세 살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은데 경찰관이 해당 영상을 삭제해 버렸어요.”

어느 날, ○○경찰서에 “세 살 난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 같으니 조사해 주십시오.”라는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었다.

경찰관은 어린이집 CCTV 본체를 확보하고, 민원인의 아들이 등원하였던 3월 2일부터 4월 13일까지의 영상자료를 확인했는데,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영상은 발견하지 않았으나,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관련 영상자료 확인을 위한 방문을 요청하였다. 민원인과 가족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경찰관이 관련 영상자료를 보여

주기 전 테스트 과정에서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영상자료가 삭제되어 버렸다.

이후 민원인은 경찰관이 어린이집 CCTV 영상자료 중 20여 일치를 고의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영상자료 중 삭제된 영상의 복원 및 이 영상자료의 고의 삭제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삭제된 기간의 영상파일이 복원되고 해당 CCTV는 특정 시점의 영상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영상 보존기간인 60일이 경과된 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고의로 영상자료를 삭제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경찰관이 영상을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 보존기간 설정 값을 확인하지 않고, 영상자료의 사본을 만들지 않는 등 관리 소홀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CCTV 영상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삭제되고 새로이 녹화되며, 또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만 보존되므로 그 설정값 확인은 필수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CCTV의 영상 보존기간 설정 값을 확인하지 않았고, 영상자료의 사본을 만들지 않는 등 증거물인 CCTV 영상자료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됐다.

권익위는 영상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범죄수사규칙」 제165조 제1항 및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을 위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요즘 잇을 만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이 기사화된다. 그만큼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걱정도 클 것이다. 그래서 원내 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위 사례에서 부모는 아들의 학대 정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 자료를 담당 경찰관이 지워 버렸다고 생각하여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다행히 자료가 복원되어 아동학대 정황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던 상황이다.

일선 경찰관은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할 때부터 사건을 송치할 때까지 변경 또는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CCTV 영상자료의 경우 반드시 영상 보존기간 설정 값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본을 만들어 두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수사를 할 때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제1항, 멸실할 염려가 있는 증거물은 보존에 유의해야 하는 같은 규칙 제165조(증거물의 보존) 제1항, 디지털 증거는 변경 또는 상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디지털 증거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증거수집 및 처리의 원칙) 제2항 관련 사례임.



36

증거영상자료 삭제 등 관리 미흡

증거자료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



“물건을 도난당해 경찰에게 방범용 CCTV 위치를 알려준 후 영상을 보여 달라고 했어요. 경찰은 화질이 좋지 않다, 초상권 문제가 있다 등의 이유를 대며 보여주지 않다가 결국 삭제해 버렸어요.”

민원인은 상가에 보관하고 있던 대형가전제품 등을 도난당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은 상가 뒤쪽 문짝이 모두 없어졌고 창문은 떨어져 나갔으며 상가 내 물건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민원인은 경찰관에게 인근 CCTV의 위치를 알려 주었다.

이후 경찰관으로부터 사건현장 인근 방범용 CCTV 3개를 확보했다는 연락이 와서 민원인은

경찰서를 찾아가 이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경찰관은 용의차량 측면 각도의 영상은 보여주었으나 정면 각도의 영상은 ‘점심 먹어야 한다. 사건처리가 바쁘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보여주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은 경찰관에게 “혹시 범인한테 돈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경찰을 믿고 돌아가시면 조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자 민원인은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서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CCTV 영상을 꼭 봐야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당황한 기색으로 “화질이 좋지 않아 봐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찍혀 있어 초상권 문제도 있으니 보여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래서 민원인은 “초상권이 문제가 된다면 경찰관 입회하에 보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경찰관은 “사실은 자료를 삭제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황당한 대답을 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증거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삭제되도록 한 경찰관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권익위에 손을 내밀었다.

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경찰관은, CCTV 분석 및 주변을 탐문하여 상가 출입이 잦은 주변 고물상 등을 찾아가 수사했으나 특이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수사가 장기화되자 미제 편철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CCTV 자료는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제16조에 따라 삭제했다고 답변하였다.

수사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잘 관리해야 하고, 자료가 증거물의 가치가 없어 보관의 필요성이 없다면 그에 따른 보고를 해야 한다.

경찰관은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16조에 따라 CCTV 영상 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CCTV를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고 수사

목적으로 자료를 취득하였다면 수사관련 업무규정인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영상자료가 증거물로서 가치가 없어 보관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보관의 필요성이 없었다면 그에 따른 보고를 했어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고 컴퓨터 교체 과정에서 삭제하였으므로, 미제사건의 증거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권익위는 미제사건의 증거물(영상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CCTV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고, 영상 자료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삭제해 버렸다. CCTV 영상만 믿고 훔쳐간 물건을 되찾길 고대하던 민원인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다.

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보고 후 삭제해야 한다.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범죄수사규칙」 제5조(증거물의 채취 대상) 제1항, 과학수사요원은 사진, 동영상 자료 등 영상 증거물을 채취해야 하는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7조(증거물의 채취 대상), 미해결 사건의 증거물은 계속 보관해야 하는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3조(보관 대상 증거물) 관련 사례임.



피의자 신문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 돼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거짓말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거울을 집어던져 모욕감을 느꼈어요.”

민원인은 범죄혐의로 광역수사대 범죄수사팀 소속 A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었다. 민원인이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자 옆에 있던 B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거짓말하면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라고 소리를 질렀고, 자신의 책상 컴퓨터 앞에 있던 손거울을 들어 책상 위로 집어던지며 “다음 조사 때는 거울을 보면서 조사를 받으세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라고 소리쳤으며, 겁나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는 민원인에게 “당신 남편도 같이 구속시켜야 해. 남편까지 구속되면 연락을 해야 하니까 당신 아들(고등학생) 연락처를 알려주세요.”라고

계속하여 소리쳤다.

이후 민원인은 A경찰관을 기피신청 하였고, 해당 경찰서에서는 다른 경찰관으로 교체하였다. 그리고 민원인은 수사 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한 경찰관들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손을 내밀었다.

이에 대해 B경찰관은 민원인이 재범 우려, 증거 인멸 등 주요 구속사유에 해당하고, 남편이 공동 피의자이므로 구속통지 대상자로서 아들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고 답변했다.

경찰관은 화가 나더라도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하고,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모욕을 주면 안 된다.

경찰관은 공직자로서 상대방의 연령, 죄목, 피의사실 등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친절하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B경찰관은 민원인이 거짓 말을 한다는 이유로 “계속 거짓말하면 구속시킬 수 있다.”, “다음 조사 때는 거울을 보면서 조사를 받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거울을 책상 위로 던지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같은 행위는 민원인에게 강압적으로 느끼게 하거나 모욕감을 유발하였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민원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B경찰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였다.



시사점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경찰관이 억박지르거나 고압적인 언행을 하는 사례가 간간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반말 · 폭언 · 강압적인 말투 · 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

일선 경찰관은 공직자로서 상대방의 연령, 죄목, 피의사실 등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친절하고 고운 말을 사용하여야 함을 꼭 명심해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 · 공정 의 의무),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하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에게 반말 · 폭언 · 강압적인 말투 · 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 관련 사례임.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교통사고 조사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38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언행

나이가 든 피해자를 꼬부랑 할머니라고 표현해서 모욕감을 줘서는 안 돼



“천천히 걷던 중 뺑소니사고를 당한 어머니에게 ‘꼬부랑 할머니같이 걷다가 사고를 당했다’ 며 모욕감을 준 경찰관을 조치해 주세요.”

민원인의 83세 어머니(이하 ‘피해자’ 라 한다)는 뺑소니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입원했는데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어 CCTV 영상에 찍힌 뺑소니사고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경찰관은 “피해자가 꼬부랑 할머니처럼 눈을 아래쪽에 두고 허리를 앞으로 숙인 채 양손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걷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택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이 꼬부랑 할머니처럼 걷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서, 차량 뒤쪽에 허리가 부딪혀 부상을 당했습니다. 차는 도망쳤고요.”라고 말하였고, 민원인은 “꼬부랑 할머니

라니요! 뺑소니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항의 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꼬부랑 할머니란 말이 어때서 그래요. 뭐가 잘못됐습니까?”라고 말하고 민원인의 말을 끊고 고압적으로 대응하여 민원인이 매우 불쾌했다.

이후 민원인은 불친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에 대해 조치를 해달라며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CCTV 영상을 민원인에게 전화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꼬부랑 할머니’라고 표현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는 없었고 민원인에게 고압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민원인의 말을 끊을 이유도 없고 실제 끊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리고 경찰관은 뺑소니 운전자를 특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접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하여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답변하였다.

CCTV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꼬부랑 할머니’라고 말한 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된다.

경찰관은 공직자로서 상대방의 연령, 죄목, 피의사실 등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친절하고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담당 경찰관이 사용한 ‘꼬부랑 할머니’라는 표현이 설령 CCTV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하하는 언행으로 느껴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 「범죄수사규칙」 제3조 등을 위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위 사례의 민원인은 연로하신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경찰관으로부터 ‘꼬부랑 할머니’ 처럼 천천히 걸어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상했을 것이다.

민원인은 경찰관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었을 것 같다. “노인이 천천히 걷는 게 당연하지. 사고의 원인을 느리게 걷는 노인 탓으로 돌리는 거냐? 노인은 밖에 나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거냐?”

어르신들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 매우 위독한 상황이 되므로, 사고조사 경찰관들은 가족들에게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히 사고조사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관은 사건 관계인에게 반말 · 폭언을 굉장히 자제하는 경향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을 자기도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항상 말 조심을 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해야 하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예절) 제1항,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에게 반말 · 폭언 · 강압적인 말투 · 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는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 관련 사례임.



뺑소니 교통사고 수사 미흡

뺑소니 교통사고 후 13시간 뒤 자수한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해야



“뺑소니 사고를 낸 다음 날 자수한 가해자에 대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민원인은 밤 12시경 포장마차 일을 마치고 주변을 정리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여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이 사고의 목격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니 차량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날 가해자가 경찰서 교통조사팀을 찾아와 자수하였는데, 경찰관은 상당한 시간(13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민원인은 이 경찰관이 가해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경찰관이 권익위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할 때 가해자의 혈색이나 보행상태, 말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나 정상적이었고, 13시간이나 경과하여 음주운전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사고 후 상당 시간이 지났더라도 음주측정을 할 수 있었지만 담당 경찰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경찰관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가해자의 혈색, 보행상태, 말투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으나 정상적이었고,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지 13시간이 지난 시점이어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음주징후가 있는 경우에도 수 시간 뒤에 나타난 경우 집에서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부인(否認)하는 등 변수가 있어 음주운전을 밝혀내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고 가해자도 경찰 조사 시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가해자는 3차레나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다. 또한, 가해자의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여부는 확인할 수 있었고, 가해자는 22:00경 지인을 만났다가 2시간 30분이 지난 00:30경 귀가하기 위해 도주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지인 등을 상대로 행적조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경찰관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후 자수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경험칙상 인식하고 있었다. 권익위는 가해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시사점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향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응보적 관점에서 가해자는

처벌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음주운전 피해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 측정이 어렵다고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교통조사관은 가해자에 대하여 질병, 피로, 졸음, 음주, 약물중독 등 사고 당시의 신체 상태를 측정해야 하는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18호) 제18조(가해자 조사) 제1항, 같은 규칙 제7조 4. 형사책임의 규명 관련 사례임.



40

교통사고 조사 시 마디모 검사결과 미반영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 및 자료만을 수용해서는 안 돼



“교통사고 후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말만 믿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해 억울합니다.”

민원인은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민원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상대차량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민원인과 상대차량의 운전자(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피해자와 그의 배우자가 병원치료를 요구하여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경찰관에게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검사를 신청하였다. 마디모 검사 결과, 피해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피해자는 병원에서 발급한 본인과 배우자의 2주 진단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경찰관은 교통사고에 대한 마디모 검사 결과 피해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 근거하여 민원인에게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과 벌점 10점을 부과하였으며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교통사고처리가 부당했다고 보아 경찰관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사고 관련 사진으로 보아 교통사고가 인정되고, 인적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 마디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민원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처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고 차량 탑승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마디모 검사 결과를 수사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 교통사고는 ‘경미사고 유형’에 해당하여 ‘경미교통사고 조사요령’에 따라 피해자가 ‘임상적(추정)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경찰관은 ‘최종진단서’ 제출을 요구해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최종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현저한 운동변화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

증상은 길어야 4일 내 대체로 사라진다.’ 고 보았고, 피해자 등이 제출한 진단서는 교통사고 발생 후 6일이 경과하여 진단을 받은 것으로 의사 및 피해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조사가 필요함에도 하지 않았으며, 상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 없이 민원인에게 별점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됐다.

권익위는 경찰관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교통사고 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민원 교통사고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사점

‘교통사고를 당하면 뒷목부터 잡고 크게 다친 척해야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실제 일부 정형외과에서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멀쩡한 몸으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고 있다. 이런 가짜 환자들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어 대다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또 ‘교통사고는 당시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 후유증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과잉대응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마디모 검사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가해, 피해 차량의 움직임 등을 분석해 피해 정도를 추정한다. 마디모 검사를 통해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부풀린 병원 진단서와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해 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권익위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교통사고 조사관이 사고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 상황 등을 명확히 조사하고 피해자 진단서, 마디모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추가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6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교통사고의 조사), 「교통사고조사규칙」 제13조(피해상황 조사) 관련 사례임.



41

교통사고 수사단서 부실 확보

뺑소니 사건을 수사할 때 신고자가 제공한
수사단서의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



“뺑소니 사고를 당한 후 가해차량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관에게 제공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휴무여서 전달이 안 돼 내사중지 되었어요. 화나고 억울합니다.”

민원인은 2020. 4. 10.(금) 22:35경 차량을 운전하여 OO대교로 진출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있었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민원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뒤 범퍼를 파손한 뒤 도주하였다. 하지만 민원인의 블랙박스로는 가해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다.

민원인은 2020. 4. 11.(토) 00:10경 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를 제출한 후 구간단속카메라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민원인은 자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가해차량 바로 뒤에서 주행한 A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서 2020. 4. 11.(토) 11:06경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휴무라 하였고, 16:34경 다시 전화를 걸어 통화한 B경찰관에게 A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민원인은 2020. 4. 12.(일) 14:55경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 경찰관이 휴무라 하였고, 2020. 4. 13.(월) 10:41경 비로소 담당 경찰관과 통화가 되었으나 전달받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다시 A차량번호를 알려주었다.

담당 경찰관은 2020. 4. 13.(월) 14:55경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A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2020. 4. 12. 이후 것만 남아 있고, 사건당일 영상은 이미 삭제되었으며, 구간단속카메라로도 확인할 수 없어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조치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권익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민원인의 전화를 받은 B경찰관은, 민원인의 전화를 받은 날은 토요일로 방문 민원인이 많이 몰려서 부주의로 담당 조사관에게 민원인의 요청사항을 전달하지 못하였고, 중요 사항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된 잘못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피해자가 제공한 뺑소니 피의차량에 대한 수사단서 정보를 소홀히 하여 피의차량을 특정하지 못한 채 내사중지에 이르게 한 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된다.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민원인이 뺑소니 피의차량을 특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관들에게 연락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였고, 이 수사단서는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녹화영상이므로 시간이 경과할 경우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경찰관들이 뺑소니 신고사건을 수사하면서 민원인이 제공한 수사단서를 소홀히 하여 피의차량을 특정하지 못한 채 내사중지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해당 경찰관들을 포함한 교통조사관들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시사점

위 사례는 민원인이 제공한 수사단서를 경찰관들이 부주의하여 놓친 경우이다. 민원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가해차량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가해차량은 도망갔고, 담당 경찰관이 휴무라는 이유로 처리되지 않아서 결국 가해차량을 잡지 못하게 되었다.

교통조사 경찰관들이 업무 인수인계만 제대로 하였으면 충분히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는 경찰관의 부주의가 명백하다.

일선 경찰관은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지역 내 CCTV 영상자료, 인근 개인들이 설치한 CCTV 영상자료와 사고 당시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고, 신고자가 제공한 수사단서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피의차량을 특정할 수 있도록 초동수사를 성실히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서장은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조직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를 전개해야 하는 「교통사고조사규칙」 제30조, 교통조사관이 뺑소니 사고를 접수한 때는 신고자뿐 아니라 뺑소니 차량의 사항도 자세히 조사해야 하는 「교통사고조사규칙」 제31조 제1항 관련 사례임.

7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교통법규 위반 신고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42

차량 소유자에게 잘못된 과태료 부과

차량 소유자일지라도 점유·관리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과태료 부과는 부당



“사라진 자동차가 대포차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우선 납부했고, 해당 기관에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했어요.”

민원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주)○○○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이후 대출업체가 부도나면서 민원인의 자동차는 어딘가로 사라져 대포차가 되었다.

그런데 대포차로 사용된 기간에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약 5백만원이 민원인에게 부과되었고 민원인은 이를 납부하였으나 너무나도 억울하여 경찰서에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해당 경찰서는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자동차를 잃어버린 것도 억울한데 과태료까지 물게 되어 억울하다며 권익위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

법원에서는 대포차로 사용되었던 자동차를 민원인에게 인도하고 대포차로 사용된 기간 동안 발생한 제세공과금을 민원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는 법원 집행관을 통해 민원인에게 인도되었다. 또한 법원에서는 대출업체에서 자동차에 설정한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도 하였으므로, 대포차가 된 민원인의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이력을 고려하면, 과태료 발생 기간 동안 민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민원인의 자동차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 법규에도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해당 경찰서에 민원인에게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해주도록 요청하였다.

시사점

민원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대출업체가 폐업하여 자동차를 잃어버렸다. 대출금만 갚으면 자동차를 찾아올 수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사라져 당황했을 것이다. 거기다 잃어버린 자동차가 대포차로 사용되었고, 수많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무려 7백여만 원이 나왔다.

자동차를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까지 내게 된 민원인은 정말 억울했을 것이다.

판결, 보험이력 등을 통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미 과태료를 납부하였더라도 부당하게 부과한 과태료는 환급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차를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4항,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국고금 관리법」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제1항 관련 사례임.



긴급자동차 과태료 미면제

긴급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면제 판단 시 과도한 증거자료 요구하면 안 돼



“긴급자동차로 위급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과속을 하여 과태료가 나왔어요. 경찰은 과태료 면제를 위한 관련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가 불가하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민원인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인데, 농약을 마신 환자를 긴급 이송하게 되었다. 환자는 출발 당시부터 의식이 없었고, 이동 중 약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심정지가 됨에 따라 함께 탑승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정도여서 빠른 이송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과속을 하였다.

그 후 민원인은 또 다른 환자를 이송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 환자로 복부 내

장기과손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병원 측의 빠른 이송 요구와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과속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민원인은 두 차례에 걸쳐 과속단속카메라에 걸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에 민원인은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 출발 병원의 의사소견서, 전원소견서,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은 도착 병원의 의무기록사본, 응급실의사기록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너무 늦게 왔다’는 말과 함께 과태료 면제가 불가하다고 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경찰관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위급 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의 긴급자동차는 소방차량과 그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과도한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찰청은 과태료 면제 절차를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이 과태료 면제를 위하여 제출한 출발지 병원의 진료의뢰서 및 전원소견서, 민원인의 진술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보면, 환자 이송 시 환자 상태가 위급했다는 사실과 과태료 위반 일시에 민원인이 환자 이송 중이었음이 충분히 확인된다.

그런데도 경찰관은 추가로 도착지 병원의 의무기록사본과 응급실의사기록지를 요청

했는데, 이 자료는 「의료법」에 따라 민원인이 열람을 할 수 없는 자료이고, 또한 긴급 환자나 그 보호자를 통하여 의료기록 자료를 발급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출이 곤란하였다. 그럼에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과태료 면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권익위는 두 차례에 걸친 민원인의 「도로교통법」 제17조 제3항 위반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같은 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도록 요청하였고, 또한, 민간이 운영하는 긴급자동차의 과태료 면제 입증자료를 명확히 하는 과태료 면제 절차(지침)를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시사점

요즘엔 구급차가 지나갈 때 차들이 알아서 길을 열어주는 모세의 기적이 많다. 이와 반대로 접촉사고가 일어난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결국 그 택시기사가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그만큼 생명을 다투는 환자를 싣고 가는 긴급자동차를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졌다.

그런데도 위 사례의 경우 긴급자동차의 과속을 지나치게 무겁게 받아들여 여러 가지 무리한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게 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 교통법규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찰청에서도 일선에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긴급 사유의 소명자료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관련 사례임.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기타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44

공상 인정 거부

복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개인적
질환이라고 판단하면 안 돼



“부대 내 괴롭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도 억울한데, 복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공상 인정을 거부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민원인은 의경으로 부대 내에는 대부분이 경찰관들이었고 주로 선임 의경 한 명과 생활하였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민원인에게 ‘모자란 놈, 털 떨어진 놈’ 등의 폭언을 하였고, 아버지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보라거나 지갑을 열어보는 등 괴롭혔다. 선임 의경 역시 짜증을 자주 냈고, 일과 후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으로도 잔소리를 하며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

민원인은 부대 내의 괴롭힘을 호소하며 유서를 작성하였고, 휴가 중에 정신병원을 찾아가 적응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기에 이르렀다.

해당 경찰서는 진상조사 후 관련 경찰관 및 의경에 대해 경고, 징계, 근신, 수사과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후 민원인은 입대 전에는 정상이었으나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으니 자신의 질병을 공무 중 부상(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해당 경찰서에서는 민원인이 잘 적응하고 있었다는 동료의 진술과 경찰관들의 발언 수위가 심하지 않았다는 점, 민원인의 짧은 복무기간(18일)을 고려할 때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공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민원인은 자신의 질병을 공무 중 부상(공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권익위에 도움을 호소하였다.

복무기간이 짧고 잘 적응하고 있었다는 동료의 진술이 있더라도 복무와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공무 중 부상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은 입대 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 직전 받은 우울증 검사에서도 정상이었다. 그러나 경찰관과 선임 의경의 부조리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고, 민원인을 진료한 의사도 민원인이 부대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부대 복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질병과 복무와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인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권익위는 민원인의 질병과 복무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이거나 물리적인 관점에서만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권익위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1항을 들어 민원인의 질병에 대해 공무 중 부상 여부를 다시 심의하도록 요청했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민원인의 질병에 대해 공무 중 부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의경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시사점

군대는 상명하복 규율과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해 괴롭힘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다.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민원인이 겪은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다. 민원인은 불과 18일 동안의 부대 생활 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부모들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늘상 마음을 졸이며 산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 귀한 아들이 군대 내 괴롭힘으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하였고,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치료 후에도 일상 기능의 저하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아들이 유서까지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질병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하늘이 무너졌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누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가고 싶겠는가?

이 사례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경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결여되어 발생한 것이다. 부대 내 부조리가 일부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주변인의 진술과 짧은 복무기간만을 이유로 질병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였고, 결국 민원인의 질병을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단

하여 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일선에서는 의경에 대한 공무 중 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적인 연관성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경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근무환경을 고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공상군정’이 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법원 판결, 일반사회와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부대에서 의경 개인이 체감하는 고통은 일반사회와 다르므로 국가는 의경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복무기간 동안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보존하여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 사례임.

| 2020 |

경찰분야 빈발 고충민원 사례집



집필진 이재구, 한희선, 백수경, 김우곤, 최경진,
장준용, 송상봉, 김인성, 신성권, 조강현,
주명진, 강유주, 김가영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일 2020년 11월

제작기획 고충처리국 경찰민원과

인쇄 가온기획(044-867-0400)